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30호 2016. 3. 30.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 - 33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350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  
 거창군 공고 제2016 - 352호 공시송달공고 ..... 16  
 거창군 공고 제2016 - 359호 공시송달공고 ..... 17  
 거창군 공고 제2016 - 363호 거창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18  
 거창군 공고 제2016 - 367호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37

회 람									
--------	--	--	--	--	--	--	--	--	--

거창군 고시 제2016 - 3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2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91-1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30호 2016. 3. 30.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 - 33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350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  
 거창군 공고 제2016 - 352호 공시송달공고 ..... 16  
 거창군 공고 제2016 - 359호 공시송달공고 ..... 17  
 거창군 공고 제2016 - 363호 거창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18  
 거창군 공고 제2016 - 367호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37

회 람									
--------	--	--	--	--	--	--	--	--	--

거창군 고시 제2016 - 3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2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91-1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붙임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91-1	2009-12-28	2016-03-25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4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미기들길 60	2009-04-01	2016-03-25	마을 앞들이 쌀 농사가 잘 되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01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길 278	2009-04-01	2016-03-25	임진왜란 때 동래정씨가 열었다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231-142	2009-12-28	2016-03-25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59-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202	2009-04-01	2016-03-25	양기,음기를 텃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08-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보해길 850-28	2009-04-01	2016-03-25	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45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42-10	2009-04-01	2016-03-25	천재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 조례반영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670-807)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cchojh@korea.kr

붙 임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2016. 03.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 조례반영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문 삭제(안 제26조)
- 나.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50조제2항, 안 제54조 제2호)
- 다.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2항제3호)
-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5항)
- 마.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3)
- 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18)
- 사.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용도지역 확대(별표3,별표4,별표5,별표7,별표10, 별표12,별표14,별표18,별표20,별표2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6. 3. 29 ~ '16. 4. 19 (20일간)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9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제19호 중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53조 제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5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영 제84조의 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4조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제55조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제5항”을 “제6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의2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제56조의3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의4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의5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의6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3부터 별표5까지, 별표7, 별표10, 별표12,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u>  <u>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            1.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u>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26조 삭제</u></p>
<p><u>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u></p>	<p><u>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u>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p>

<p>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p> <p>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p>	<p>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p> <p>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p> <p>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p> <p>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p> <p>2.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p>
--	---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생략)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②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 2. (생략)

<신 설>

③ ~ ④ (생략)

<신 설>

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40퍼센트 이하.

20. ~ 21. (현행과 같음)

②-----제8항

-----  
-----  
-----

1. ~ 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84조의 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호

<p>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략)</li> <li><u>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u></li> <li>「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u>50퍼센트 이하</u></li> <li>~5.(생략)</li> </ol> <p>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p> <p>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p>	<p>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u></li> <li><u>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u></li> </ol> <p>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4항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u>개발진흥지구: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u>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u>40퍼센트</u>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u>30퍼센트</u></li> <li>----- <u>60퍼센트</u> --</li> <li>~5.(현행과 같음)</li> </ol> <p>제55조(건폐율의 강화) -----제5항 ----- ----- -----</p> <p>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 제 6 항 제 1 호 ----- ----- -----</p>
---	--

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가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제6항제2호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제6항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제6항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제6항

1. ~ 3.(현행과 같음)



트 이하로 한다.

1. ~ 3.(생략)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제6항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7항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8일

### 거 창 군 수

- 공고내용 :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6. 03. 29. ~ 2016. 04. 12.(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8일

거 창 군 수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03. 29. ~ 2016. 04. 12.(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30일

# 거 창 군 수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및 세부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및 세부조서

##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계	247 (403,715)	57 (98,172) )	27 (17,767 )	17 (25,042 )	13 (55,363 )	53 (111,061)	24 (54,024 )	29 (57,037 )	137 (194,482)
도로	91 (228,126)	45 (66,785 )	22 (12,285 )	11 (12,091 )	12 (42,409 )	46 (94,715)	21 (46,647 )	25 (48,068 )	- (66,626)
공원	6 (30,474)	5 (9,092)	1 (1,798)	4 (3,646)	- (3,648)	1 (8,288)	1 (3,927)	- (4,361)	- (13,094)
녹지	2 (7,706)	- )	- )	- )	- )	20 (1,350)	1 (450)	1 (900)	- (6,356)
유통업 무설비	1 (13,011)	1 (13,011 )	1 (2,000)	- (5,505)	- (5,506)	- )	- )	- )	- )
문화 시설	1 (14,392)	- )	- )	- )	- )	1 (1,008)	- )	1 (1,008)	- (13,384)
하천	146 (110,006)	6 (9,284)	3 (1,684)	2 (3,800)	1 (3,800)	3 (5,700)	1 (3,000)	2 (2,700)	137 (95,022)

주 : ( )는 사업비

## 2.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군 비	
합	계	-	-	118,933	-	403,715	403,715	161,668	242,047	10,470	231,577	-	-	17,767	25,042	55,363	54,024	57,037	194,482	-
도로	소계	-	-	38,430	-	228,126	228,126	102,765	125,361	6,570	118,791	-	-	12,285	12,091	42,409	46,647	48,068	66,626	-
가조 마상	1	대로 3-13	16~ 18년	607	25	3,838	3,838		3,838	3,838				1,279	1,279	1,280				2020
거창 가지	1	중로 1-16	16~ 21년	3,144	20	18,569	18,569		18,569		18,569			1,424	1,425	3,144	3,144	3,144	6,288	2020
위천 장기	1	소로 1-56	16년	59	10	207	207		207		207			207						2020
거창 대동	1	소로 2-4	16년	99	8	612	612		612		612			612						2020
거창 대동	1	소로 2-5	16년	154	8	308	308		308		308			154	154					2020
거창 대동	1	소로 2-13	16년	138	8	289	289		289		289			289						2020
거창 대동	1	소로 2-21	16년	90	8	1,121	1,121		1,121		1,121			1,121						2020
거창 송정	1	소로 2-61	16년	66	8	625	625		625		625			625						2020
거창 중앙	1	소로 2-83	16년	102	8	485	485		485		485			485						2020
거창 중앙	1	소로 2-84	16년	201	8	412	412		412		412			412						2020
거창 가지	1	소로 2-105	16년	330	8	915	915		915		915			915						2020
거창 상림	1	소로 2-111	16~ 17년	562	8	1,224	1,224		1,224		1,224			612	612					2020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별 사업비						단 계 별 사 업 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군 비
거창 대동	1	소로 2-18 1	16~ 17년	75	8	1,264	1,264		1,264		1,264			632	632					202 0
용양 노현	1	소로 2-20 8	16년	124	8	335	335		335		335			335						202 0
거창 상림	1	소로 3-36	16년	108	6	222	222		222		222			222						202 0
거창 서변	1	소로 3-42	16~ 17년	320	6	545	545		545		545			272	273					202 0
거창 대동	1	소로 3-94	16~ 17년	222	6	1,042	1,042		1,042		1,042			521	521					202 0
가조 마상	1	소로 3-11 1	16년	550	6	1,648	1,648		1,648		1,648			823	825					202 0
거창 동변	1	소로 3-16 4	16년	228	6	380	380		380		380			190	190					202 2
거창 동변	1	소로 3-16 5	16년	64	6	114	114		114		114			114						202 2
남상 무촌	1	소로 3-19 7	16년	195	6	400	400		400		400			400						202 0
신원 과정	1	소로 3-21 5	16년	370	3	641	641		641		641			641						202 0
거창 중앙	2	중로 2-10	17~ 19년	740	15	5,093	5,093		5,093		5,093				1,159	1,159	2,775			202 0
거창 상림	2	중로 2-13	17~ 18년	565	15	3,123	3,123		3,123		3,123			1,004	2,119					202 0
거창 가지	2	소로 2-10 2	17~ 18년	391	8	1,458	1,458		1,458		1,458			676	782					202 0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거창 대평	2	소로 2-14 3	17~ 18년	343	8	721	721		721					360	361				202 0
가조 마상	2	소로 2-19 1	17년	95	8	267	267		267					267					202 0
용양 노현	2	소로 2-20 4	17~ 18년	381	8	1,108	1,108		1,108					554	554				202 0
거창 송정	2	소로 2-26 1	17~ 18년	340	8	681	681		681					340	341				202 0
거창 송정	2	소로 3-26	17년	82	8	166	166		166					166					202 0
거창 송정	2	소로 3-57	17~ 18년	573	6	1,241	1,241		1,241					620	621				202 0
거창 정장	2	소로 3-66	17~ 18년	296	6	1,007	1,007		1,007					563	444				202 0
거창 송정	2	소로 3-95	17년	64	6	471	471		471					471					202 0
거창 대평	3	대로 1-11	18~ 22년	2,910	35	29,967	29,967		29,967						2,252	2,252	2,252	23,211	202 0
주상 성기	3	대로 1-15	18~ 22년	3,620	35	33,692	33,692	33,692							8,422	8,423	8,423	8,424	202 8
용양 동호	3	대로 1-16	18~ 22년	1,350	35	12,939	12,939	12,939							3,234	3,235	2,335	4,135	202 8
용양 산포	3	대로 1-17	18~ 22년	5,480	35	49,399	49,399	49,399							12,34 9	12,00 0	12,70 0	12,350	202 8
가조 마상	3	대로 3-14	18~ 19년	708	15	2,732	2,732		2,732	2,732					1,366	1,366			202 0
거창 대평	3	중로 1-11	18~ 19년	213	20	1,376	1,376		1,376						688	688			202 0
거창 김천	3	소로 2-63	18년	25	8	479	479		479						479				202 0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거창 대평	3	소로 2-76	18년	65	8	417	417		417		417				417				2020
거창 가지	3	소로 2-125	18년	203	8	564	564		564		564				564				2020
가조 마상	3	소로 2-189	18년	181	8	807	807		807		807				807				2020
가조 마상	3	소로 2-194	18년	80	8	282	282		282		282				282				2020
거창 가지	3	소로 3-47	18~19년	763	6	1,488	1,488		1,488		1,488				744	744			2020
가조 마상	4	중로 2-19	19~20년	495	15	2,433	2,433		2,433		2,433					1,216	1,217		2020
거창 상림	4	중로 3-1	19~20년	259	12	1,107	1,107		1,107		1,107					553	554		2020
가조 마상	4	중로 3-11	19~20년	275	12	1,141	1,141		1,141		1,141					570	571		2020
거창 대동	4	소로 2-12	19년	106	8	635	635		635		635					635			2020
거창 대평	4	소로 2-65	19년	145	8	694	694		694		694					694			2020
거창 김천	4	소로 2-67	19~20년	233	8	1,500	1,500		1,500		1,500					750	750		2020
거창 김천	4	소로 2-70	19년	43	8	277	277		277		277					277			2020
거창 가지	4	소로 2-97	19년	157	8	793	793		793		793					793			2020
거창 가지	4	소로 2-127	19년	600	8	1,441	1,441		1,441		1,441					1,441			2020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거창 대평	4	소로 2-14 1	19년	122	8	464	464		464		464					464			202 0
거창 대평	4	소로 2-14 5	19년	96	8	374	374		374		374					374			202 0
가조 수월	4	소로 2-18 7	19년	181	8	651	651		651		651					651			202 0
가조 수월	4	소로 2-19 7	19~ 20년	314	8	1,372	1,372		1,372		1,372					686	686		202 0
용양 노현	4	소로 2-20 9	19년	132	8	425	425		425		425					425			202 0
용양 노현	4	소로 2-21 0	19년	104	8	319	319		319		319					319			202 0
거창 김천	4	소로 3-4	19년	293	6	1,345	1,345		1,345		1,345					672	673		202 0
거창 가지	4	소로 3-68	19년	65	6	128	128		128		128					128			202 0
거창 대동	4	소로 3-98	19년	78	6	186	186		186		186					186			202 2
가조 마상	4	소로 3-11 2	19년	63	6	95	95		95		95					95			202 0
용양 죽림	4	소로 3-12 1	19~ 20년	460	6	1,139	1,139		1,139		1,139					569	570		202 0
남상 무촌	4	소로 3-19 5	19년	226	6	522	522		522		522					522			202 0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군 비
거창 정장	5	대로 1-10	20~ 24년	600	35	6,735	6,735	6,735									1,415	5,320	202 0	
거창 정장	5	중로 2-1	20~ 23년	500	15	2,426	2,426		2,426		2,426							551	1,875	202 0
거창 대동	5	중로 2-16	20~ 21년	470	15	1,919	1,919		1,919		1,919							157	1,762	202 0
거창 대동	5	소로 2-1	20년	42	8	180	180		180		180							180		202 0
거창 대동	5	소로 2-2	20년	93	8	270	270		270		270							270		202 0
거창 가지	5	소로 2-77	20년	135	8	504	504		504		504							504		202 0
거창 가지	5	소로 2-79	20년	64	8	244	244		244		244							244		202 0
거창 가지	5	소로 2-80	20년	123	8	467	467		467		467							467		202 0
거창 중앙	5	소로 2-81	20년	104	8	667	667		667		667							667		202 0
거창 상림	5	소로 2-91	20년	173	8	346	346		346		346							346		202 0
거창 가지	5	소로 2-98	20~ 23년	665	8	1,818	1,818		1,818		1,818							488	1,330	202 0
거창 가지	5	소로 2-10 7	20년	183	8	495	495		495		495							495		202 0
거창 가지	5	소로 2-12 6	20년	234	8	624	624		624		624							624		202 0
거창 정장	5	소로 2-18 3	20년	322	8	783	783		783		783							783		202 8
가조 수월	5	소로 2-18 6	20년	252	8	607	607		607		607							607		202 0

구분	우선순위	사업개요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실효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연장(m)	폭원(m)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도비										군비
가조수월	5	소로 2-188	20년	125	6	452	452		452		452						452		2020	
가조마상	5	소로 2-195	20년	111	8	303	303		303		303						303		2020	
가조마상	5	소로 2-196	20년	312	8	816	816		816		816						816		2020	
위천장기	5	소로 2-220	20년	320	8	865	865		865		865						865		2020	
거창김천	5	소로 3-29	20~21년	387	6	1,390	1,390		1,390		1,390						809	581	2020	
거창정장	5	소로 3-99	20~21년	481	6	1,759	1,759		1,759		1,759						1,037	722	2028	
거창정장	5	소로 3-100	20년	600	6	1,256	1,256		1,256		1,256						628	628	2028	
거창송정	5	소로 3-101	20년	74	6	392	392		392		392						392		2028	
가조수월	5	소로 3-110	20년	115	6	435	435		435		435						435		2020	
가조마상	5	소로 3-115	20년	222	6	658	658		658		658						658		2020	
<b>공원</b>	<b>소계</b>					<b>30,474</b>	<b>30,474</b>		<b>30,474</b>		<b>30,474</b>			<b>1,798</b>	<b>3,646</b>	<b>3,648</b>	<b>3,927</b>	<b>4,361</b>	<b>13,094</b>	
거창대동	2	동동공원	17~21년			16,529	16,529		16,529		16,529				2,811	2,812	2,812	2,728	5,366	2020
가조마상	2	마상공원	17~20년			1,290	1,290		1,290		1,290			375	375	270	270			2020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 업 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가조 수월	2	수월 공원	17~ 20년			559	559		559		559			154	154	125	126		202 0
옹양 동호	2	동호 공원	17~ 21년			5,044	5,044		5,044		5,044			306	307	307	824	3,300	202 0
거창 정장	4	정장 공원	19~ 23년			5,254	5,254		5,254		5,254					413	413	4,428	202 0
주상 도평	1	희랑 생활 체육 공원	16년			1,798	1,798		1,798		1,798		1,798						203 5
녹지	소계					7,706	7,706		7,706		7,706					450	900	6,356	
거창 송정	4	대 1-11 호선변	19~ 22년			2,904	2,904		2,904		2,904					450	450	2,004	202 0
거창 정장	5	대 1-10 호선변	20~ 23년			4,802	4,802		4,802		4,802					450	4,352	202 0	
유통 업무 설비	소계					13,011	13,011	3,900	9,111	3,900	5,211			2,000	5,505	5,506			
거창 대평	1	유통 업무 설비	16~ 18년			13,011	13,011	3,900	9,111	3,900	5,211			2,000	5,505	5,506			202 8
문화 시설	소계					14,392	14,392		14,392		14,392						1,008	13,384	
거창 장팔	5	문화 산업 단지	20~ 25년			14,392	14,392		14,392		14,392						1,008	13,384	202 0
하천	소계			80,503		110,006	110,006	55,003	55,003		55,003			1,684	3,800	3,800	3,000	2,700	95,022
	1	죽동천	16년	700		684	684	342	342		342			684					202 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군 비
	1	유령천	16~ 17년	1,200		1,900	1,900	950	950		950			500	1,400					202 8
	1	죽림천	16~ 17년	1,200		1,900	1,900	950	950		950			500	1,400					202 8
	2	음기천	17~ 18년	1,000		2,100	2,100	1,050	1,050		1,050				500	1,600				202 8
	2	황산천	17~ 18년	1,400		2,200	2,200	1,100	1,100		1,100				500	1,700				202 8
	3	중촌천	18~ 19년	1,000		1,900	1,900	950	950		950					500	1,400			202 8
	4	각골천	19년	900		1,600	1,600	800	800		800						1,600			202 8
	5	연곡천	20년	1,100		1,500	1,500	750	750		750							1,500		202 8
	5	원동천	20년	600		1,200	1,200	600	600		600							1,200		202 8
	6	갈항천	21년 이후	1,0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감악천	21년 이후	190		200	200	100	100		100								200	202 8
	6	강남천	21년 이후	430		500	500	250	250		250								500	202 8
	6	강사천	21년 이후	630		650	650	325	325		325								650	202 8
	6	강선대 천	21년 이후	100		100	100	50	50		50								100	202 8
	6	개화천	21년 이후	145		150	150	75	75		75								150	202 8
	6	계동천	21년 이후	200		200	200	100	100		100								200	202 8
	6	고대천	21년 이후	600		600	600	300	300		300								600	202 8
	6	고비천	21년 이후	1,500		1,500	1,500	750	750		750								1,500	202 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군 비
	6	고신천	21년 이후	85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고창천	21년 이후	1,850		15,000	15,000	7,500	7,500		7,500								15,000	202 8
	6	공수천	21년 이후	250		250	250	125	125		125								250	202 8
	6	관동천	21년 이후	640		700	700	350	350		350								700	202 8
	6	광성천	21년 이후	220		250	250	125	125		125								250	202 8
	6	괘암천	21년 이후	220		200	200	100	100		100								200	202 8
	6	구례천	21년 이후	200		200	200	100	100		100								200	202 8
	6	구산천	21년 이후	800		1,100	1,100	550	550		550								1,100	202 8
	6	궁항천	21년 이후	25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금광천	21년 이후	325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금능천	21년 이후	927		1,128	1,128	564	564		564								1,128	202 8
	6	내장포 천	21년 이후	750		750	750	375	375		375								750	202 8
	6	내춘천	21년 이후	668		700	700	350	350		350								700	202 8
	6	내학천	21년 이후	500		500	500	250	250		250								500	202 8
	6	넘터천	21년 이후	540		540	540	270	270		270								540	202 8
	6	노현천	21년 이후	690		650	650	325	325		325								650	202 8
	6	노혜천	21년 이후	8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구분	우선순위	사업개요					집행방식별사업비						단계별사업비						실효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연장(m)	폭원(m)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도비									
6	녹동천	21년 이후	155		200	200	100	100		100								200	2028
6	당동천	21년 이후	50		250	250	125	125		125								250	2028
6	당산세천	21년 이후	1,242		1,200	1,200	600	600		600								1,200	2028
6	당산천	21년 이후	147		132	132	66	66		66								132	2028
6	당산천 1	21년 이후	700		1,200	1,200	600	600		600								1,200	2028
6	대곡소천	21년 이후	330		300	300	150	150		150								300	2028
6	대방골천	21년 이후	290		300	300	150	150		150								300	2028
6	대야천	21년 이후	330		350	350	175	175		175								350	2028
6	대천천	21년 이후	200		200	200	100	100		100								200	2028
6	대촌천	21년 이후	800		800	800	400	400		400								800	2028
6	대학동천	21년 이후	234		250	250	125	125		125								250	2028
6	대현천	21년 이후	100		100	100	50	50		50								100	2028
6	덕곡천	21년 이후	800		800	800	400	400		400								800	2028
6	도산당천	21년 이후	247		200	200	100	100		100								200	2028
6	도평천	21년 이후	180		180	180	90	90		90								180	2028
6	독골천	21년 이후	200		200	200	100	100		100								200	2028
6	동례천	21년 이후	175		200	200	100	100		100								200	202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6	동호숲 천	21년 이후	31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동호천	21년 이후	495		500	500	250	250		250							500	202 8
	6	두부실 천	21년 이후	1,1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둔동천	21년 이후	760		750	750	375	375		375							750	202 8
	6	등동천	21년 이후	30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뜸북천	21년 이후	700		1,200	1,200	600	600		600							1,200	202 8
	6	만추골 천	21년 이후	600		600	600	300	300		300							600	202 8
	6	말흘천	21년 이후	1,100		1,200	1,200	600	600		600							1,200	202 8
	6	매학천	21년 이후	800		700	700	350	350		350							700	202 8
	6	면동천	21년 이후	600		600	600	300	300		300							600	202 8
	6	모덕천	21년 이후	100		100	100	50	50		50							100	202 8
	6	모전천	21년 이후	1,200		1,800	1,800	900	900		900							1,800	202 8
	6	무릉2 천	21년 이후	390		400	400	200	200		200							400	202 8
	6	무릉천	21년 이후	310		310	310	155	155		155							310	202 8
	6	묵계천	21년 이후	716		1,400	1,400	700	700		700							1,400	202 8
	6	미기들 천	21년 이후	150		150	150	75	75		75							150	202 8
	6	뱀골천	21년 이후	150		150	150	75	75		75							150	202 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6	범치골천	21년 이후	100		100	100	50	50		50							100	2028
	6	병곡천	21년 이후	295		300	300	150	150		150							300	2028
	6	병산천	21년 이후	200		276	276	138	138		138							276	2028
	6	사도동천	21년 이후	780		1,200	1,200	600	600		600							1,200	2028
	6	사동뒀골천	21년 이후	500		500	500	250	250		250							500	2028
	6	사양천	21년 이후	800		1,400	1,400	700	700		700							1,400	2028
	6	산포천	21년 이후	450		450	450	225	225		225							450	2028
	6	삼산천	21년 이후	800		1,200	1,200	600	600		600							1,200	2028
	6	삼포천	21년 이후	210		400	400	200	200		200							400	2028
	6	상개금천	21년 이후	8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8
	6	상개명천	21년 이후	85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8
	6	상마천	21년 이후	240		2,500	2,500	1,250	1,250		1,250							2,500	2028
	6	새담천	21년 이후	300		300	300	150	150		150							300	2028
	6	석강천	21년 이후	1,080		1,100	1,100	550	550		550							1,100	2028
	6	성골천	21년 이후	550		600	600	300	300		300							600	2028
	6	성북천	21년 이후	690		700	700	350	350		350							700	202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6	소야천	21년 이후	395		400	400	200	200		200							400	202 8
	6	손항천	21년 이후	410		400	400	200	200		200							400	202 8
	6	신기천	21년 이후	110		650	650	325	325		325							650	202 8
	6	신기천 1	21년 이후	643		900	900	450	450		450							900	202 8
	6	신기천 2	21년 이후	1,035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심동천	21년 이후	600		600	600	300	300		300							600	202 8
	6	심지천	21년 이후	220		200	200	100	100		100							200	202 8
	6	쌍봉천	21년 이후	520		600	600	300	300		300							600	202 8
	6	이주천	21년 이후	5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안금1 천	21년 이후	8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안금2 천	21년 이후	150		250	250	125	125		125							250	202 8
	6	안봉천	21년 이후	510		550	550	275	275		275							550	202 8
	6	양곡천	21년 이후	200		200	200	100	100		100							200	202 8
	6	양지상 천	21년 이후	25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양지천 1	21년 이후	248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역촌천	21년 이후	150		250	250	125	125		125							250	202 8
	6	영승천	21년 이후	350		176	176	88	88		88							176	202 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6	와룡2 천	21년 이후	31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와룡천	21년 이후	510		720	720	360	360		360							720	202 8
	6	왕대천	21년 이후	101		170	170	85	85		85							170	202 8
	6	왕암위 천	21년 이후	230		440	440	220	220		220							440	202 8
	6	왕암천	21년 이후	340		340	340	170	170		170							340	202 8
	6	외등천	21년 이후	150		150	150	75	75		75							150	202 8
	6	우혜 새터천	21년 이후	100		100	100	50	50		50							100	202 8
	6	우혜큰 땀천	21년 이후	30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운정천	21년 이후	400		400	400	200	200		200							400	202 8
	6	원농산 청	21년 이후	410		400	400	200	200		200							400	202 8
	6	월평천	21년 이후	400		400	400	200	200		200							400	202 8
	6	월화천	21년 이후	2,050		2,000	2,000	1,000	1,000		1,000							2,000	202 8
	6	율리천	21년 이후	150		150	150	75	75		75							150	202 8
	6	은사천	21년 이후	2,5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임실천	21년 이후	100		50	50	25	25		25							50	202 8
	6	자하천	21년 이후	29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행 방식 별 사업비						단 계 별 사업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 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군 비
	6	장전천	21년 이후	29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장지천	21년 이후	310		310	310	155	155		155								310	202 8
	6	저전천	21년 이후	630		650	650	325	325		325								650	202 8
	6	정골천	21년 이후	600		600	600	300	300		300								600	202 8
	6	중봉계 천	21년 이후	8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중산앞 천	21년 이후	30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중평천	21년 이후	250		500	500	250	250		250								500	202 8
	6	지하천	21년 이후	600		600	600	300	300		300								600	202 8
	6	진개울 천	21년 이후	520		500	500	250	250		250								500	202 8
	6	진목천	21년 이후	750		800	800	400	400		400								800	202 8
	6	천곡천	21년 이후	1,350		1,400	1,400	700	700		700								1,400	202 8
	6	천동천	21년 이후	290		300	300	150	150		150								300	202 8
	6	칭림천	21년 이후	220		250	250	125	125		125								250	202 8
	6	청아천	21년 이후	350		700	700	350	350		350								700	202 8
	6	토점천	21년 이후	900		1,400	1,400	700	700		700								1,400	202 8
	6	통사골 천	21년 이후	1,95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 8
	6	평촌천	21년 이후	740		800	800	400	400		400								800	202 8

구분	우선 순위	사 업 개 요					집 행 방 식 별 사 업 비						단 계 별 사 업 비						실효 시기
		사업 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총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연장 (m)	폭원 (m)			국 비	지 방 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도 비									
	6	풍계천	21년 이후	200		200	200	100	100		100							200	2028
	6	하수내천	21년 이후	500		500	500	250	250		250							500	2028
	6	학동천	21년 이후	550		550	550	275	275		275							550	2028
	6	학림천	21년 이후	800		1,000	1,000	500	500		500							1,000	2028
	6	학산천	21년 이후	250		300	300	150	150		150							300	2028
	6	한기천	21년 이후	550		550	550	275	275		275							550	2028
	6	호암천	21년 이후	800		1,350	1,350	675	675		675							1,350	2028
	6	홍석동천	21년 이후	100		100	100	50	50		50							100	2028
	6	화동천	21년 이후	390		400	400	200	200		200							400	2028
	6	황점천	21년 이후	250		300	300	150	150		150							300	2028
	6	회남천	21년 이후	850		850	850	425	425		425							850	2028

##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6. 3 . 30 .

거 창 군 수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액이 없으며, 복구비 또한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 부서 24명으로 5년 평균보다 4명 증가하였습니다.  
(2014. 7. 안전점검담당 신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8종으로 36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에 총사업비 11,462백만원으로 덕곡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공사 외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투입예산은 지난해보다 8,755백만원 증가되었으면 이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한 보수로 저수지 안전도를 확보하였습니다.
  - 재해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 소요 예산 400백만원으로 주택 3,016건, 온실 39,188㎡ 가입 지원 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은 200백만원입니다.
  - 2015년은 8개사업에 총사업비 539백만원(도비 299, 군비 240)을 예산편성하여 군비 사용액은 236백만원으로 실확보액 200백만원 대비 36백만원을 초과 사용하였음.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0등급으로 위험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동일합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75시설 중 45시설이 내진성능 확보하였으며 전 시설물의 60% 내진확보율을 달성하였음.
- 금년도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은 47백만원의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건축물 및 거창군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12백만의 예산을 투입· 실시하여 2,490명의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한 안전문화의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25회 실시하여 2,193명 미취학아동 및 학생, 지역주민들의 사고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안전한 거창만들기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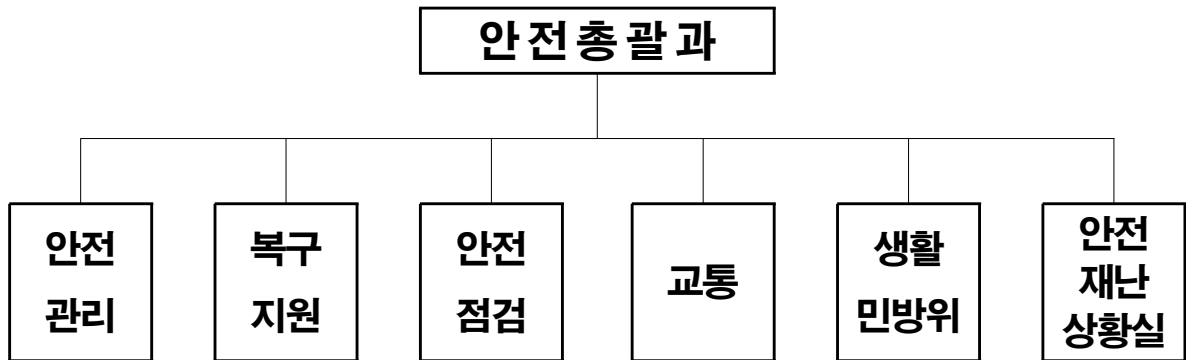
◆ 거창군은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재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때 우리군의 재난관리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 없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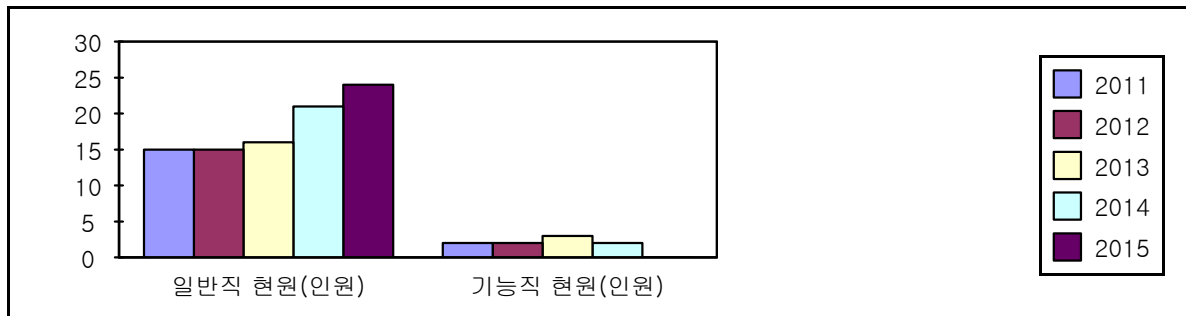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6	26	-	1	6	10	6	3		
	현원	24	24	-	1	7	7	5	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직 현원(인원)	15	16	21	24	24
기능직 현원(인원)	2	3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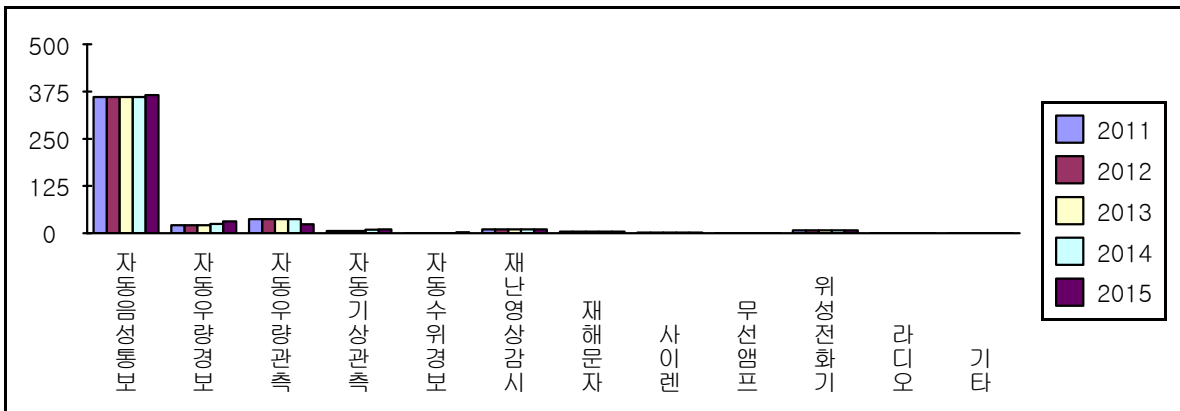


- 안점점검담당 신설로 인한 현원증가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6	거창군 일원
자동우량경보시설	31	거창군 일원
자동우량관측장비	24	거창군 일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0	거창군 일원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3	거창교, 사마교, 장풍숲교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재해문자전광판	4	장풍숲외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2	거창군청, 스포츠파크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8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1	361	361	361	366
자동우량경보시설	21	21	21	25	31
자동우량관측장비	37	37	37	37	24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6	6	8	9	10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0	0	0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0	10	10	10	10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2	2	2	2	2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	-	-	-	-
위성전화기	8	8	8	8	8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	-	-	-	-
기타	-	-	-	-	-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총 계			33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교육	'15.1.22	국민안전처	1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담당자 교육	'15.2.13.	경남도청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해	'15.5.11~13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현장체험 교육	'15.6.2	거창군	20	
민방위, 재난안전분야	'15.7.1~20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3	
민방위, 재난경보, 훈련 및 동원교육	'15.9.7~11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3	
민방위, 재난경보, 훈련 및 동원교육	15.10.26~30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2	
민방위경보 전달 및 운영체계 교육	15.11.23~27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2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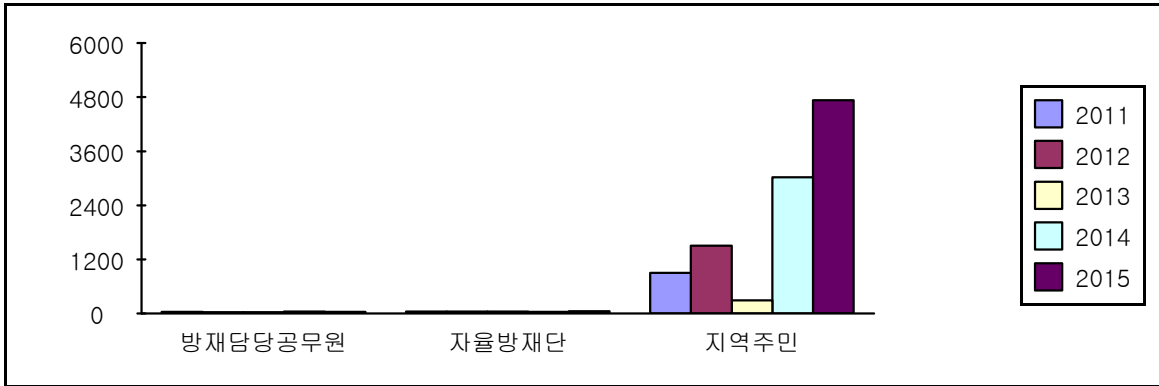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5.04.17	남해군 물금마을	38	현장안전체험교육	자체	
2015.06.10	경남도청	4	상반기 재해구호 민간단체 교육	전국재해 구호협회	
2015.10.29~ 10.30	경북 켄싱턴리조 트	2	직무능력 강화교육 워크숍	국민안전처	
2015.11.25	경북 농업인회관	3	하반기 재해구호 민간단체 교육	전국재해 구호협회	

###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주관	비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15.1.12 ~27.	APC 2층 교육장 및 남상면외 4개면사무소	1,443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거창군	
교통안전	'15.3.~6.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	350	등하교길 교통사고 안전 및 교통안전 행동요령	거창군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15.3.~6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	400	어린이 화재사고 예방교육	거창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15.9.11 ~ 9.12	거창 스포츠 파크	2,490	생활분야 어린이 안전체험 프로그램 실시	안전행정부 / 거창군	
생활 안전교육	'15.12.3 (14:00)	합천 복지회관	50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	경상남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32	30	30	40	33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40	42	44	31	47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900	1,500	290	3,024	4,733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으로 지역주민 교육 실시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15.4.14	거창군청	24	봉사단 역량, 제보 방법	거창군	
'15.12.10	사회복지회관	20	봉사단 역량, 제보 방법	거창군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63	23	23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설명절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설명절 안전수칙 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2015-02-16	거창군 로터리 일원	100	
2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홍보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2015-03-05	거창군 로터리 일원	50	
3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홍보	2015-04-13	거창군 재래시장 일원	650	
4	놀이시설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캠페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2015-05-19	거창군 재래시장 일원	50	
5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2015-07-03	거창군 로터리 일원	150	
6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2015-08-19	거창군 로터리 일원	100	
7	추석명절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추석명절 안전수칙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2015-09-16	거창군 재래시장 일원	100	
8	가을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가을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2015-10-15	거창군 재래시장 일원	100	
9	안전문화사고 예방	관내 대중목욕탕 심폐소생술 안내문 개침	2015.10.20	거창군 관내 목욕탕 21개소	25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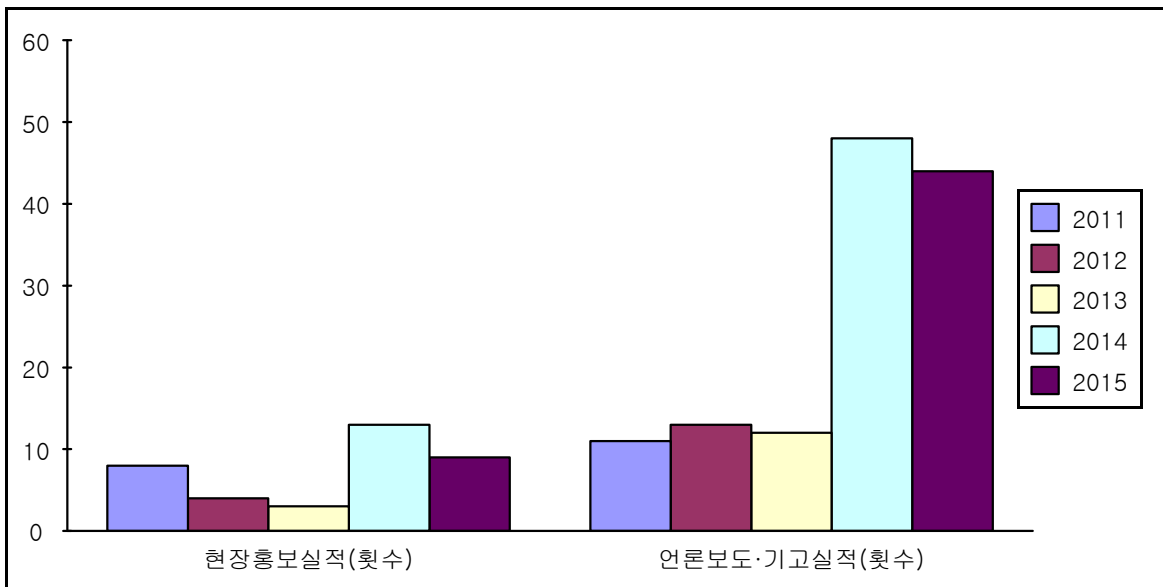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 (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	거창군,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농기계관련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2015.1.13	거창 중앙신문	
2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2015.1.16	아림신문	
3	거창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기능확대	거창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기능확대	2015.1.28	거창신보	
4	거창군 4월까지 대대적인 안전대진단 실시	거창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관련 보도자료	2015.2.3	거창인터 넷뉴스원	
5	설맞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생활속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홍보	2015.2.16.	연합뉴스	
6	재난 경각심 고취를 위한 2015 재난포스터 공모전 개최	재난포스터 공모전 개최 자격요건 및 의의	2015.2.26	연합뉴스	
7	2015 재난포스터 공모전 개최	재난포스터 공모전 개최	2015.3.2	타임뉴스	
8	안전한 거창만들기를 위한 안전대진단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한 담당자별 직무교육	2015.3.2	아림신문	
9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교통,성폭력,전기 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2015.3.19	중앙신문	
10	거창군 2015년 주부민방위 기동대 실기경연대회 열려	심폐소생술,환자응급처치 등 실기경연 개최	2015.3.20	뉴스경남	
11	거창군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거창군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15.3.30	군민신문	
1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실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실시	2015.4.6.	뉴스웨이	
13	거창군, 사랑의 집 제26호 준공식 가져	18평의 조립식주택 완공	2015.4.13.	거창신보	
14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재난안전대응 및 역량강화	2015.4.14.	경남도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 (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5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밤샘 주차 집중단속 실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밤샘 주차 집중단속 실시	2015.5.4.	군민신문	
16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가기반체계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	2015.5.8.	아림신문	
17	풍수해 도상훈련 사전점검 전체회의 보도자료 제공	풍수해 도상훈련 대비 임무 및 역할 재점검	2015.5.13.	거창인터넷신문	
18	거창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완료	12개분야 55개 대상 1423개 시설	2015.5.19.	경남도민일보	
19	제398차 민방위의 날 풍수해대비 훈련 실시	집중호우시 대응능력 배양과 유관기관 공조강화	2015.5.21.	군민신문	
20	거창군 제230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풍수해 발생시 행동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2015.5.22	뉴스경남	
21	거창군 부르미택시 확대운행 개시	거창군 부르미택시 확대운행 개시	2015.6.1.	경상뉴스	
22	거창군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안전체험교육 실시	피난기구체험, 산악지진체험 등 안전체험교육 실시	2015.6.2.	군민신문	
23	거창군 재난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시상	거창군 재난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시상	2015.6.9	코리아데일리	
24	거창군,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2015.6.12	거창인터넷신문	
25	거창군, 제232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2015.7.3	거창韓뉴스	
26	거창군, 8월 1일부터 시내운행 버스요금 인상	읍계지역 단일요금제 시행	2015.7.23	아림신문	
27	통합지원본부 가동 및 현장출동훈련 실시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마련	2015.8.3	거창신문	
28	장민철 부군수, 지역 내 무더위 쉼터 점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및 건설공사현장 특별 점검 실시	2015.8.5	뉴스웨이	
29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수송대, 심소정 지역 예찰	2015.8.6	거창신문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 (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30	거창군, 2015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 실시	2015.8.7	아림신문	
31	거창군 구석구석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범 검거	2015.8.10	뉴스웨이	
32	거창군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거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테러 대응훈련 실시	2015.8.19	뉴스경남	
33	제23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풍수해 및 폭염대비 군민행동요령 홍보 캠페인	2015.8.20	거창인터넷뉴스	
34	거창군,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무리	비상사태 매뉴얼 총무계획 수정보완	2015.8.20	거창신보	
35	2015년 민방위 보충교육 및 보충소집훈련 실시	기본교육 미이수자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응소	2015.8.27	아림신문	
36	거창군, 2015 을지연습 경상남도 평가 군부 최우수 기관 선정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수상	2015.9.3	아림신문	
37	풍성한 한가위의 시작은 안전점검부터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2015.9.16	뉴스경남	
38	거창군, 민방위 보충2차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올해 마지막 교육·훈련으로 불참시 과태료 부과	2015.10.8	거창인터넷뉴스	
39	거창군, 제27호 '사랑의 집' 준공식 가져	120자원봉사대, 다자녀 가정에 조립식주택 지원	2015.11.9	신아일보	
40	거창군,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제8962부대 6대대에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결의	2015.11.19	거창인터넷뉴스원	
41	거창군, 2015년 민방위 3차 보충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반드시 응소	2015.11.19	거창인터넷뉴스원	
42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안) 도상 및 현장훈련	거창군 통합지원본부 기동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2015.11.19	국제뉴스	
43	동절기 화재 및 한파대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동절기 화재 및 한파대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15.12.11	거창인터넷뉴스원	
44	거창군, 연말연시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전개	거창군, 연말연시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전개	2015.12.30	거창인터넷뉴스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장홍보실적(횟수)	8	4	3	13	9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1	13	12	48	44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확대에 따른 언론 홍보 강화

####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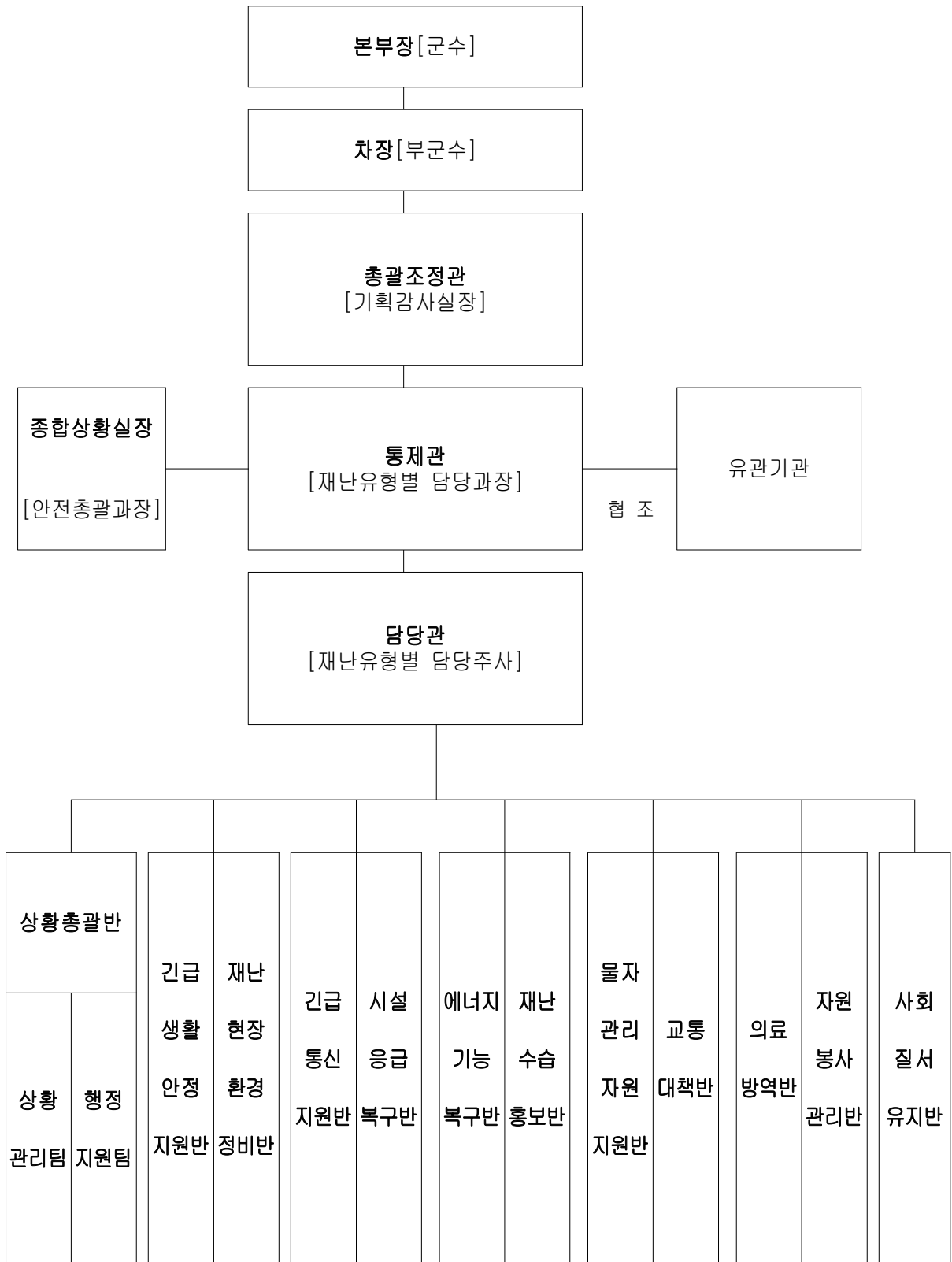
#####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군수</li> <li>• 위원 : 17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군수</li> <li>• 위원 : 4 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군수</li> <li>• 위원:55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군수→도지사→국민안전처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안전신문고 및 스마트지킴이 신고</li> <li>• 군수,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 □ 조직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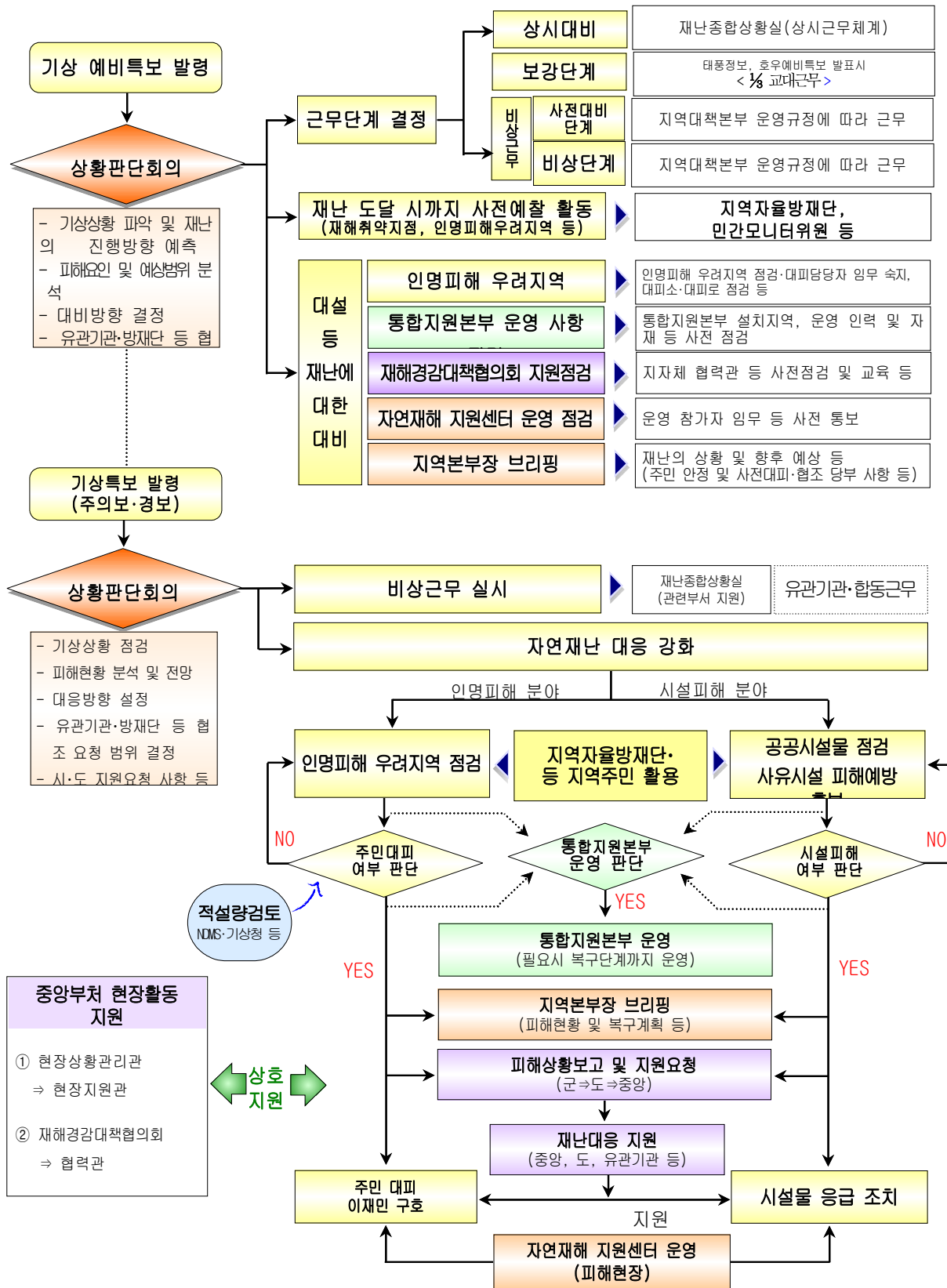
구분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총괄조정관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기획감사실장
통제관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재난수습부서 과장
상황총괄반장		상황실운영 실무업무 총괄	재난수습부서 과장
상황 총괄 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안전총괄과
	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 기능	○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사상자 및 피해시설 보상 협의 판단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안전총괄과 재난수습부서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상황근무자 후생 관리	행정과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이재민 수용소 설치 운영	주민생활지원실
	3. 재난현장 환경 정비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녹색환경과
	4. 긴급통신 지원기능	○ 상황실 방송·통신·전산 장비 구축 ○ 상황실 방송·통신·전산 장비 운영 및 지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 통신 체계 구축	행정과, KT거창지사
	5.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수습주관부서 육군제802부대6대대 관련부서

구분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협업 기능	6.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li> <li>○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li> </ul>	승강기경제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7. 재난수습 홍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전담</li> <li>○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li> <li>○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사진촬영, 전파</li> <li>○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li> </ul>	기획감사실
	8. 물자관리 및 지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li> <li>○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li> </ul>	안전총괄과 건설과
	9. 교통대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li> <li>○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li> <li>○ 재난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li> </ul>	안전총괄과
	10.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현장 구급 차량 지원</li> <li>○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li> <li>○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 (이동초소 등)</li> <li>○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li> </ul>	보건소
	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li> <li>○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li> <li>○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li> </ul>	주민생활지원실
	12. 사회질서 유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li> <li>○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li> </ul>	거창경찰서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li> <li>○ 고압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li> <li>○ 피해 주민 심리상담 지원</li> <li>○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li> <li>○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li> <li>○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li> <li>○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li> </ul>	보건소 거창소방서 육군제8962부대 6대대
관련부서		○ 재난 수습 부서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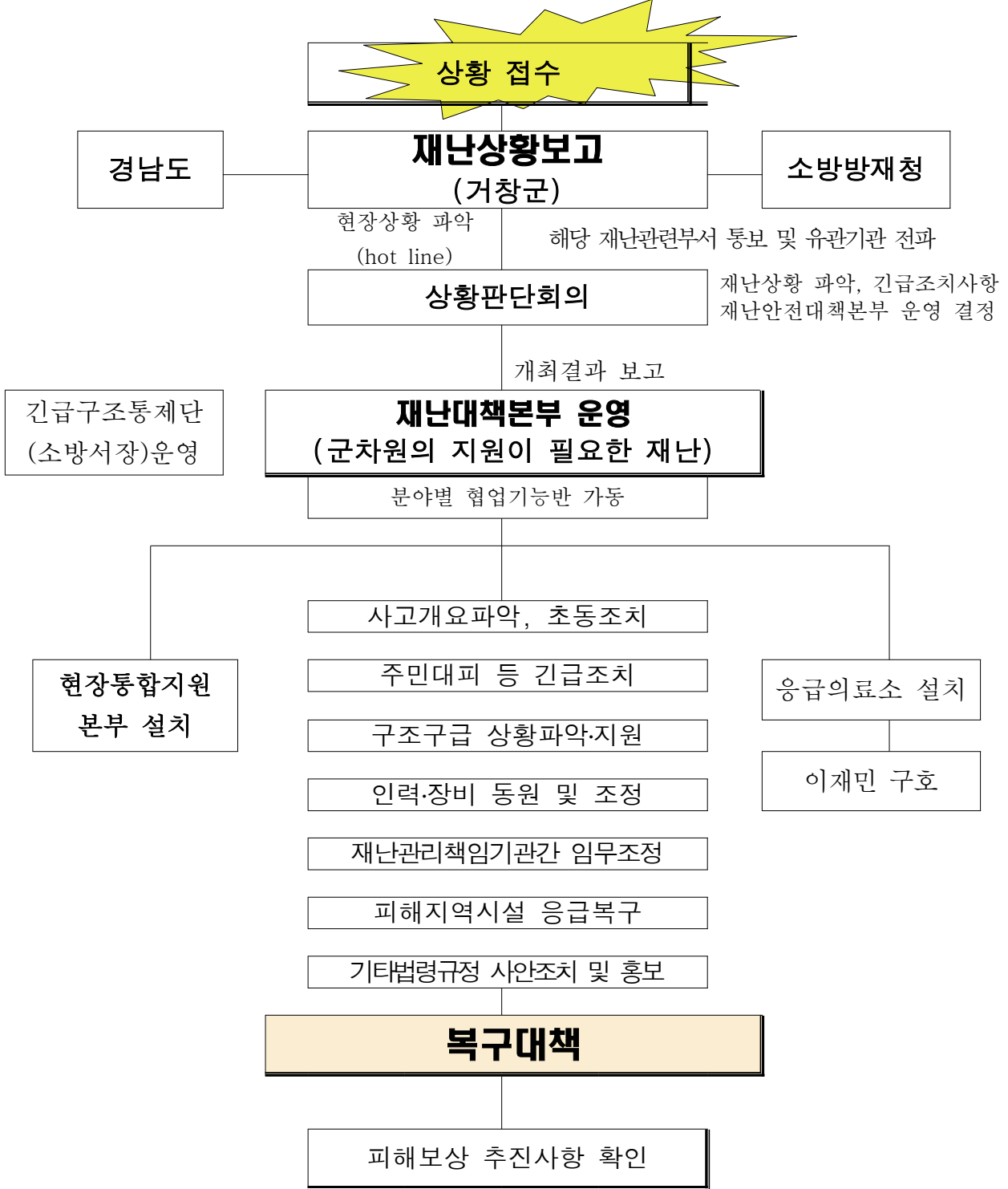


#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초기대응 행동체계도

## [자연재난]



## 재난사고 발생



# [호우재난]

상황관리

기상상황 관리

- 기상청 일기예보·특보 예의 주시
- 집중호우 예상 읍·면 사전대비 조치
- 호우 예비특보 발효 시

정보  
접수

호우 피해 발생

- 읍·면 피해상황 접수 +10 분
- 지휘계통 보고 [과장→군수(본부) +15 분

상황전파 [유선, NDMS, Safe-on]

- 해당 읍·면 초기 대응 지시(대피) +20 분
- 사전조치사항 NDMS 입력 (읍·면) +25 분
- 긴급 재난방송 요청 및 청내 13개 협업 전파 +30 분

비 상 소 집

-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 +35 분
- 상황판단회의 개최 (유관기관 포함) +55 분
- 비상단계 결정 (Ⅰ, Ⅱ, Ⅲ) +60 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비상 단계별 대책반 근무 (13개협업) +65 분
-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70 분
- 읍·면 피해상황 접수 및 인력·물자 지원 조치 +75 분
- 구호물자, 이재민 대피소 지원 조치 +75 분

초기  
대응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출동

-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소방 출동 조치 +80 분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추진 +85 분
- 피해지역 교통통제, 구호활동 조치 +85 분

군 민 홍 보

- 공영TV(유선자막),라디오 방송 +90 분
- 호우피해 발생 시 군민 행동요령 등 +90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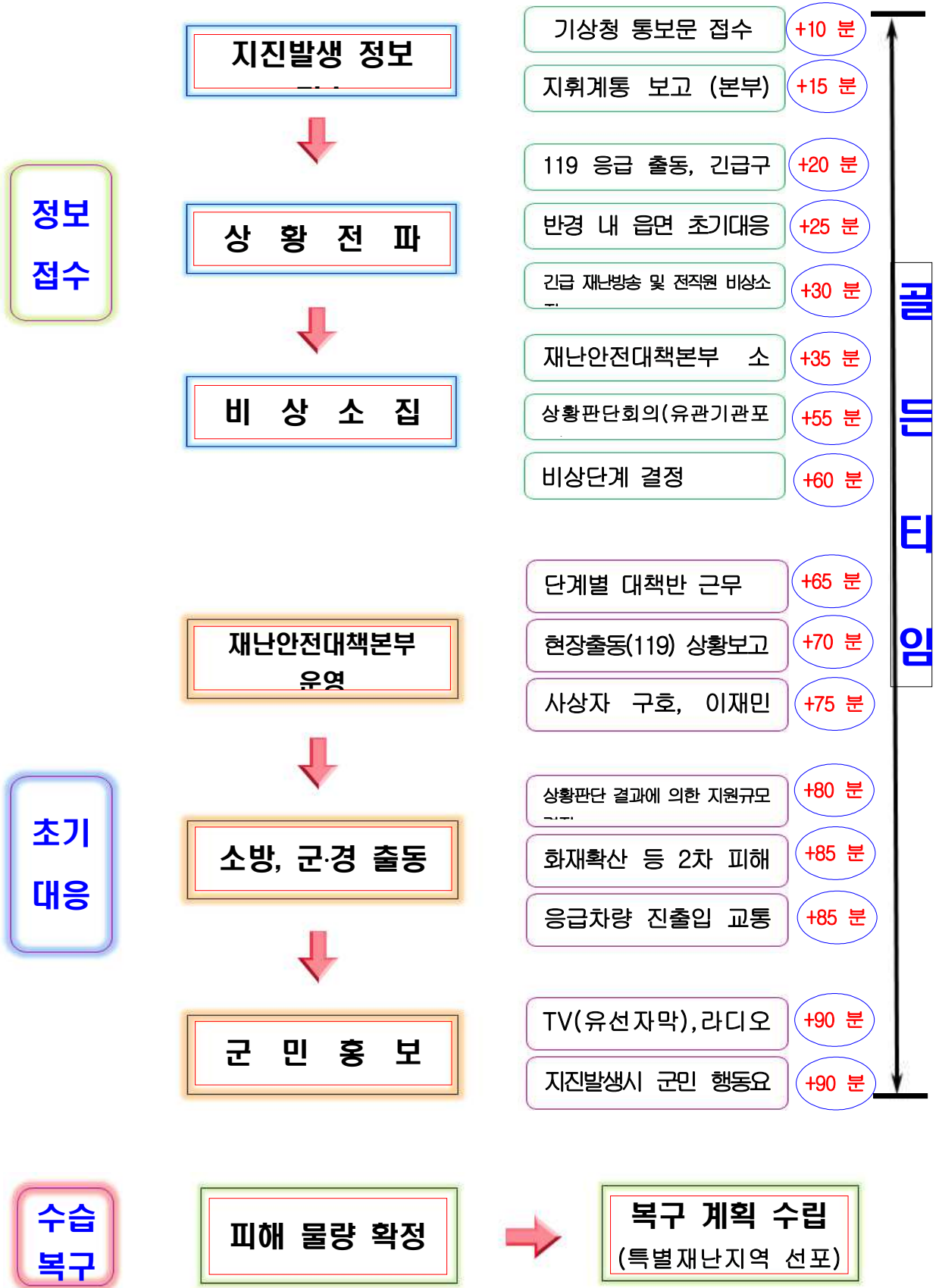
결  
정  
타  
임

수습  
복구

피해 물량 확정  
(피해조사)

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건의 검토)

[지진재난]



# [대형건축물 붕괴재난]

단계별	대응시간	조치사항	세부실행계획
붕괴 사고 상황 접수/ 보고/ 전파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보고 도시건축과장 → (안전총괄과장) → 부군수 → 군수 (구두, 전화, SNS, 서면 등)</li> <li>▪ 상황판단 (긴급처리, 긴급자시, 긴급요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건축물 붕괴사고 확인(상황발생)</li> <li>— 초동 상황보고 및 세부상황 확인</li> <li>—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및 관련단체 상황 전파</li> <li>— 추가 붕괴위험 인근 건축물 대피명령(필요시)</li> </ul>
초기 대응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비상소집</li> <li>▪ 사고수습상황실 설치</li> <li>▪ 유관기관 구조/구급 등 지원요청</li> <li>▪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과 직원 비상소집(22명) 및 근무반 편성</li> <li>—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지원 요청</li> <li>— ※ 구급 구조활동 및 교통통제 시행(소방서, 경찰서 등)</li> <li>— 사고수습상황실(도시건축과) 설치 및 긴급 안전진단반(건축사협회 등) 구성</li> <li>— 긴급 복구 인력장비 확보 및 지원(건설과, 거창읍, 건설인협회 등 유관단체)</li> <li>—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요청(주민생활지원실)</li> </ul>
후속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수습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항구복구체계 전환</li> <li>▪ 종결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반 편상운영</li> <li>— 현장처리 및 응급 보수보강방법 협의 및 시행 (사고수습 복구체제 전환)</li> <li>— 장기 방지대책 수립</li> <li>— 상황종결보고 : 도시건축과장 → 부군수 → 군수</li> </ul>

# [산불재난]

일 시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군	읍·면	
T+0 (상황발생)		산불발생 사고접수	소방서, 감시원 등 (산불발견 및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남도 (055-211-4264)</li> <li>·거창경찰서 (941-0112)</li> <li>·거창소방서 (945-1118)</li> <li>·군부대(6962부대) (943-0113)</li> <li>·거창기상대 (945-2395)</li> <li>·거창군 산림조합 (942-2247)</li> <li>·함양산립항공관리소 (960-2831)</li> <li>《비상연락체계 가동》</li> <li>·전읍면 및 국립공원,유관기관 등</li> </ul>
T+10분 ~ T+20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산림녹지과 (도산불종합대책본부) 055-211-4265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군 산불종합대책본부 (상황실 또는 산림녹지과)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산불사고대책반 운영(산불상황 총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별 대응(산불상황 접수, 진화, 종료)</li> <li>- 진화헬기 지원요청</li> <li>- 군특별진화대 출동 또는 공무원 비상소집</li> <li>- 지휘계통에 따른 사고상황 보고</li> <li>- 유관기관 협조 체계 유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li> <li>- 읍면 산불종합대책 상시 연락체계 유지</li> <li>- 단계별 진화상황 보고(도 산림녹지과)</li> <li>- 산불지역주민 보호대책 강구</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읍면 산불종합대책본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초동대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현장 파악 및 보고</li> <li>○ 진화자원파악 및 투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시원 출동명령 및 장비 지급</li> </ul> </li> <li>○ 상황판단 및 진화계획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화계획수립 및 인력투입</li> </ul> </li> <li>○ 군,유관기관 상황전파 등</li> <li>○ 지역주민보호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재난방송,주민대피유도</li> </ul> </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b>유관기관 협조</b></p> <p>관할 소방서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p> </div>
T+30분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반 편성 및 운영</li> <li>- 읍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연락체계 유지</li> <li>-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질서 유지 지원</li> <li>- 상황종료 결정 및 보고·전파</li> <li>- 피해실태 및 산불원인 조사 환경영향예측 및 복구</li> <li>- 주민대피방송 실시(재난)</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산불진화 통합지휘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본부설치,대책회의 개최</li> <li>- 진화계획,진화반편성등 토의</li> <li>○ 진화대편성 및 현장배치 등</li> <li>○ 주민대피명발령검토 및 발령</li> <li>○ 현장지휘권 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ha 이상 → 부군수</li> <li>- 100ha 이상 → 군수</li> </ul> </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산불상황분석 자문단 (유관기관 협의체)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분야관리자급 전문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분석 및 판단, 예측</li> <li>- 실질적인 통제계획 수립 등</li> </ul> </li> <li>○ 소방,군,경찰등 산불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화자원 지원,정보교류 등</li> </ul> </li> </ul> </div>

# [산사태 재난]

단계 별	대 응 시 간	조 치 사 항	세 부 실 행 계 획
산사 태 상 황 접 수/ 전 파/ 보 고	▶ T+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접수 및 전파</li> <li>■ 상황판단 (긴급처리, 긴급지시, 긴급요청 등)</li> <li>■ 상황보고 산림복지과장 → (안전총괄과장) → 부군수 → 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 발생지역 주민 즉시 대피 실시</li> <li>— 초동 상황보고 및 세부상황 확인</li> <li>— 유관기관 협조요청</li> <li>— 추가 산사태위험 인근 지역주민 대피명령(필요시)</li> </ul>
초기 대응	▶ T+1 ~ T+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출동</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li> <li>■ 주민대피 실시(2차)</li> <li>■ 응급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읍면·산사태현장예방단 사고현장 출동</li> <li>— 주민 대피 시설 확보</li> <li>— 주민대피</li> <li>— 응급복구 실시</li> </ul>
후속 조치	▶ T+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재해 응급복구</li> <li>■ 산사태 현장지휘소 구성 (대형 산사태 발생시)</li> <li>■ 종결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복구 가용인력 동원 현장 투입</li> <li>— 현장처리 및 응급 보수·보강방법 협의 및 시행</li> <li>— 장기 방지대책 수립</li> <li>— 유관기관 인력협조 요청</li> </ul>

# [저수지 긴급재난]

단계	부서(기관)	세부 실행 내용	시간(분)
재난신고 · 초기 대응 · 상황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긴급상황 발생, 재난신고 접수	2'
		관할 읍·면 주민 긴급대피, 복구장비 동원지시 · 하류지역 주민대피, 긴급 복구장비 동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의한 재난전파 · 전파대상 : 군 재난부서, 읍·면장,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재난종합상황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비상소집 · 소집방법 : 유선 및 SMS(문자전송), 지휘계통보고 · 주민대피 : 읍·면장 마을방송 실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구급·구조 실시 지휘계통 긴급보고(구두, 전화, 서면 등) · 보고체계 : 과장 → 부군수	30'
	안전총괄과 건설과 초동대응팀 운영	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안전총괄과) · 현장출동 피해상황, 행정지원 사항 파악 등 초동대응팀 운영(건설과) · 재난상황 접수, 상황유지, 위기대응 총괄	35' 40'
	해당 읍·면 및 유관기관 초기대응 조치	45'	
재난대응	안전총괄과 건설과	사고수습본부 설치(안전총괄과) · 초기재난 정보수집·분석, 사상자 병원후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 상황정보 수집 · 수집방법 : 출동소방대원, 건설과, 안전총괄과, 읍·면 등	60' 80'
	안전총괄과 건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저수지 재난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대처 · 재난지역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지원 · 주민대피장소 확보 및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장비투입 및 긴급현장복구 · 사고형태, 인명피해규모, 사고현장 상황파악	90'
	안전총괄과	TV(유선자막), 라디오방송, 신문	100'



# [도시가스 재난]

단계 별	대 응 시 간	조 치 사 항	세 부 실 행 계 획
가스 사고 상황 접수/ 전파/ 보고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구두,전화,SNS,서면 등)</li> <li>■ 현장 출동, 상황 파악</li> <li>■ 사고유형별 유관기관 조치사항 지휘·통제</li> <li>■ 초동 상황 구두보고 (군→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접수(피해규모, 공급시설 위치, 연락처 등 확인)</li> <li>—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 거창소방서, 거창경찰서)</li> <li>— 중앙제어실을 활용한 현장 상황 파악 (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li> <li>— 유관기관별 사고수습 분담역할 점검, 현장 지휘 통제 (동원장비 및 인력 수급, 사고수습 역할 부여)</li> </ul>
초기 대응	▶ 30분 ▶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선 구축</li> <li>■ 주민대피</li> <li>■ 구급/구조, 화재진압</li> <li>■ 초기대응 구두보고</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누설 차단, 방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통제, 안전펜스 설치 등 방재선 구축(경찰서)</li> <li>— 주민대피 지원 및 안내방송(군)</li> <li>— 구급/구조, 화재진압(소방서)</li> <li>— 중앙제어실/현장에서 차단밸브 작동, 배관내 잔류가스 처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업체 안전관리자)</li> </ul>
후속 조치	▶ 군 승강 기경 제과 (3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본부 설치</li> <li>■ 사고수습 복구단 급파</li> <li>■ 사고원인 조사</li> <li>■ 사고 종결 보고</li> <li>■ 복구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본부 설치(승강기경제과)</li> <li>— 현장처리 및 응급 보수보강 시행(사고수습 복구단) - 도시가스 등 연료의 긴급 수급 및 공급대책 시행</li> <li>— 사고원인 조사(가스안전공사 및 관련업체)</li> <li>— 언론, 유관기관 등에 상황종결 전파</li> <li>— 항구 복구계획 수립 및 검토</li> </ul>

## [유해화학물질 유출재난]

단계 별	대 응 시 간	조 치 사 항	세 부 실 행 계 획
상황 접수/ 전파/ 보고	T+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전파 종합상황반 가동</li> <li>■ 상황보고</li> <li>■ 상황보고 녹색환경과장 → (안전총괄과장) → 부군수 → 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상황 관리 및 전파</li> <li>— 상황근무자 근무명령</li> <li>— 관계실과와 연락체계 구축,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li> <li>— 사고원인 조사</li> </ul>
▼			
초기 대응	T+0 ~ 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li> <li>■ 주민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지역 지·출입 통제 및 사고원인 조사</li> <li>— 사고물질 대응정보 파악 및 방제활동</li> <li>— 사고지역 오염물질 수거·폐기 및 잔류오염도 확인</li> <li>— 주민대피, 사상자·이재민 보호 및 구호활동 지원</li> </ul>
▼			
후속 조치	T+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지원</li> <li>■ 방재지원</li> <li>■ 사후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활동</li> <li>— 현장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지원, 자재 수급</li> <li>—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li> <li>— 언론보도 및 주민홍보</li> <li>— 보상대책 및 유족지원대책 마련</li> </ul>

# [문화재 재난]

단계별	대응 시간	조치 사항	세부 실행 계획
화재 상황 접수/ 보고/ 전파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서 등에 화재신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li> <li>■ 신속한 진화 및 조치 (소유자 또는 관리자)</li> <li>■ 자위소방대원 소집 (주요목조문화재)</li> <li>■ 문화재 소산시행 (소유자 또는 관리자)</li> <li>■ 상황보고 : 문화재청 및 도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서(119) 신고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말하고 10초 이상 통화한다</li> <li>· 화재종류(일반, 유류, 전기, 가스)를 말한다.</li> </ul> </li> <li>■ 신속한 진화 및 지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소화기, 소화전으로 초동진화</li> <li>· 전원 차단, 가스 밸브 잠금조치</li> <li>· 문화재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li> <li>· 관련기관(경찰서, 한전, 가스공사 등) 지원 요청</li> </ul> </li> <li>■ 자위 소방대원 즉시 비상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주변거주 자위소방대원 우선 소집</li> <li>· 자위소방대원 개인별 부여된 임무수행 지시</li> <li>· 화재 초동진화 작업투입 및 문화재 주변 출입 통제</li> </ul> </li> <li>■ 문화재 소산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문화재 우선 소산후 비지정문화재 소산</li> <li>· 손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량문화재 우선 소산</li> <li>· 중량문화재는 모래주머니로 싸거나 방화피복 조치</li> <li>· 소형운반상자, 충격보호장비를 갖추어 2인 이상 운반</li> </ul> </li> <li>■ 관련기관 상황보고 : 문화재청,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문화재부서/당직실) → 도 상황실(문화재담당) → 소방방재청 상황실(문화재청 안전기준과)</li> </ul> </li> </ul>
화재 대응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서 지휘권 인계</li> <li>■ 위험물 차단(관련기관)</li> <li>■ 경찰서 질서유지 등</li> <li>■ 시군·도·문화재청 현지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서 진화대 도착후 현장지휘 인계 및 진화</li> <li>—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 가스시설 안전조치 (한전, 가스공사 등)</li> <li>— 문화재 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2차 확산 방지</li> <li>— 경찰관을 배치하여 질서유지 및 문화재 도난방지</li> <li>— 군·도·문화재청 화재피해 현지확인</li> </ul>
후속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원인 파악</li> <li>■ 화재 피해보고</li> <li>■ 문화재 복구계획 등 수립</li> <li>■ 복구예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원인(경찰서, 소방서)파악 및 피해현황 최종정리</li> <li>— 화재피해 완료보고 : 군 → 도 → 문화재청</li> <li>— 문화재 복구계획 또는 해지절차 등 이행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문화재청에서 결정)</li> </ul>

## [감염병 재난]

단계별	대응 시간	조치 사항	세부 실행 계획
상황 접수 /전파 (보고)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li> <li>■ 보고/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환자 신고 : 병의원→보건소→도→질병관리본부</li> <li>— 해외유입환자 신고 : 검역소→도(접수)→전파(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접수 동시 내부보고</li> <li>— 보건소 긴급대책반 소집, 비상근무 실시</li> </ul>
초동 조치	2시간 ~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대책반 운영</li> <li>■ 현장조사 출동</li> <li>■ 환자 모니터링</li> <li>■ 대응체계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역학조사반 현지 출동, 역학조사 실시</li> <li>— 감염자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보건소, 도 보건환경연구원)</li> <li>— 감염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 모니터링 및 예방접종력 조사</li> <li>— 범정부적(질병관리본부, 도, 보건소, 유관기관) 대응체계 가동</li> </ul>
긴급 대응 조치	4시간 ~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이송 및 격리</li> <li>■ 방역 물자지원</li> <li>■ 입국자 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의심환자 자택 격리 및 거점병원 후송</li> <li>— 국가지정 격리병상(경상대학교병원) 입원조치(1인실)</li> <li>— 신종감염병일 경우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물자 확보</li> <li>— 해외유입 감염병일 경우 입국자 관리 강화(검역소 및 도, 보건소)</li> </ul>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결과 유행차단</li> <li>■ 예방접종</li> <li>■ 감염병 확산방지 (약품, 격리소 추가 확보)</li> <li>■ 유행관찰 및 대응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검사결과 감염병 확정시 환자격리(1~3일 소요)</li> <li>— 감염병확산우려 대비 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예방접종 실시</li> <li>— 감염지역 인근 의료기관 및 감염 접촉자 모니터링</li> <li>— 감염병 정보, 위생관리 수칙 및 방역활동 등 홍보 강화</li> <li>— 유행관찰 및 대응조치(도, 질병관리본부와 연계)</li> <li>— * 검사기간 : 1차(1~3일), 2차(3~7일) 소요</li> </ul>
상황 종결	유행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결 보고</li> <li>■ 상황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지막 환자 발생일로부터 해당질환 통상 잠복기 2배 경과일 이후 유행종결(3~4주 이후) 선언</li> <li>— *홍역 : 마지막 환자 3주후 종결선언 → 질병관리본부</li> </ul>
후속 조치	종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처리</li> <li>■ 재발방지 대책 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안</li> <li>—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li> <li>— 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 비축, 관리 보안</li> <li>— 군내 방역요원에 대한 평가 및 교육 실시</li> </ul>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없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 지정시설물 없음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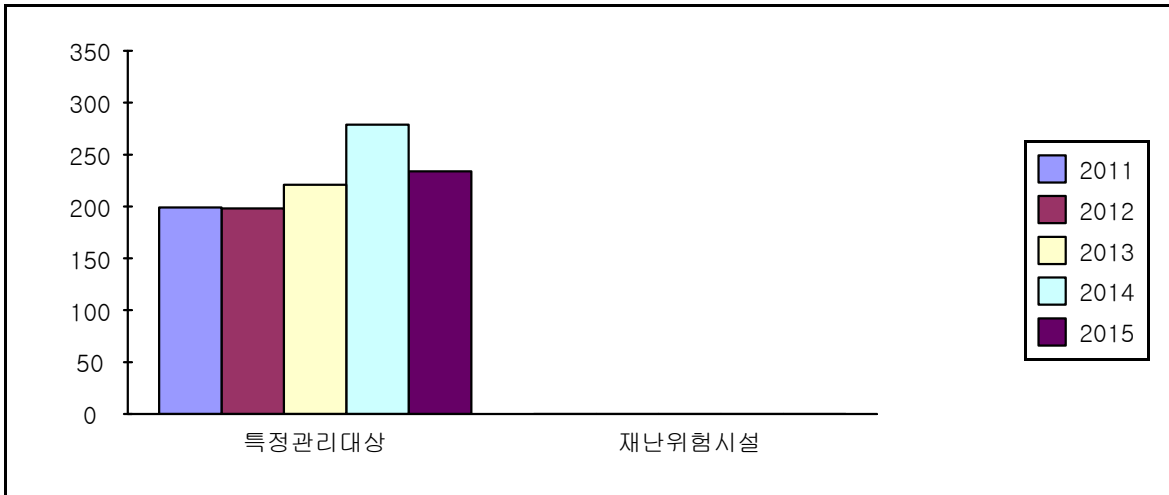
총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교량	토목공사장 및 유원시설 등	소계	공공청사	공동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건축공사장	
234	129	124	5	105	6	76	19	2	2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234	234	39	107	88	0	0	0	
시설물	129	129	6	58	65	0	0	0	
건축물	105	105	33	49	23	0	0	0	

[연도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199	198	221	279	234
재난위험시설	0	0	0	0	0



- 법령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58개소 증가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2015.1.1 ~6.30	343개소	343개소	44건	안전총괄과 및 유관기관 10명	44건 조치완료
하반기	2015.7.1 ~12.31	271개소	271개소 시설관리 부서 정기점검, 233개소 안전점검단 표본점검	40건	시설관리부 서담당자,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안전점검담 당주사 외 1	40건 조치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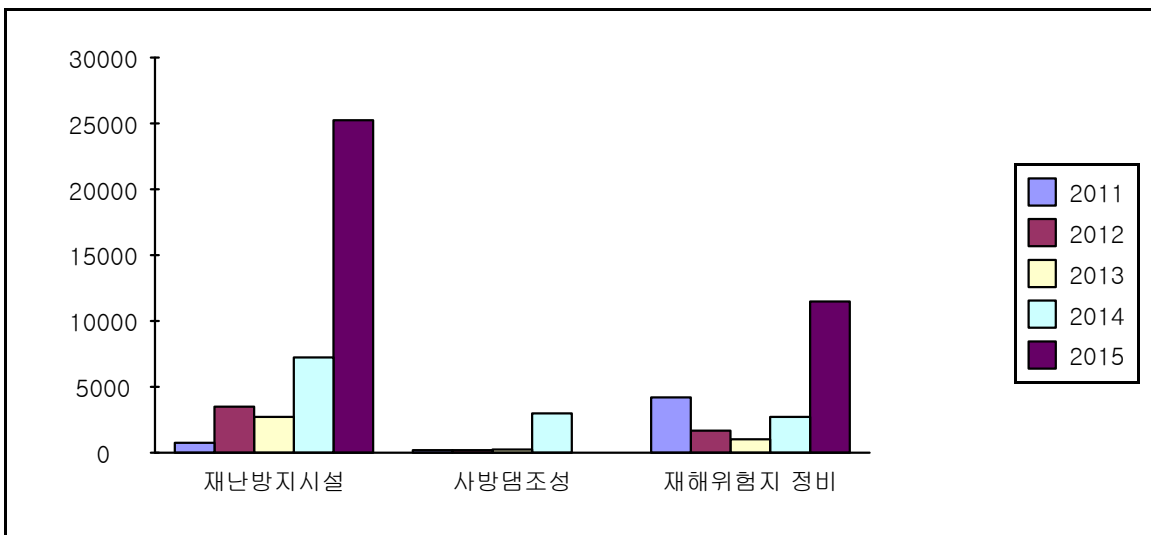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사설의 점검·관리

<재난방지사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덕곡재해위험 저수지보수공사	거창읍 송정리 일원	저수지 보수	'15. 01 ~ ' 15. 12	580	재해위험지 해소
모동재해위험 저수지보수공사	위천면 모동리 지내	저수지 보수	'15. 01 ~ ' 15. 12	2,127	재해위험지 해소
덕산재해위험 저수지보수공사	신원면 덕산리 지내	저수지 보수	'15. 01 ~ ' 16. 12	6,800	재해위험지 해소
거창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마리면 하고리 ~ 위천면 강천리	고향의 강 정비 L=9.88km	'15. 05 ~ '19. 04	25,241	재해예방
기현소하천 정비공사	위천면 남산리	하천정비 L=0.9km	'15. 03 ~ '17. 03	1,800	재해예방
2015년 상반기 시특법대상교량 안전점검	거창읍, 위천면	시특법교량 안 전점검(4개소)	'15. 03 ~ '15. 04	18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유지
합수교 외 5개소 교량 보수공사	거창읍, 고제면, 마리면, 신원면, 가조면,	교량보수공사 (신축이음교체)	'15. 05 ~ '15. 07	128	교량 유지보수
2015년 하반기 시특법대상교량 안전점검	거창읍, 위천면	시특법교량 안 전점검(4개소)	'15. 10 ~ '15. 11	4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유지
무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남하면	교량 정밀안전 진단	'15. 10 ~ '15. 11	5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유지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재난방지시설 실시	730	3,478	2,710	7,233	25,241
사방댐조성 실시	180	192	222	2,984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4,200	1,670	1,000	2,707	11,462



- 재난방지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 확행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 웬스	유흡 착제	흡착물	유처 리제
		km	천매	박스	kl
총계	193	2.2	4.8	56	130



###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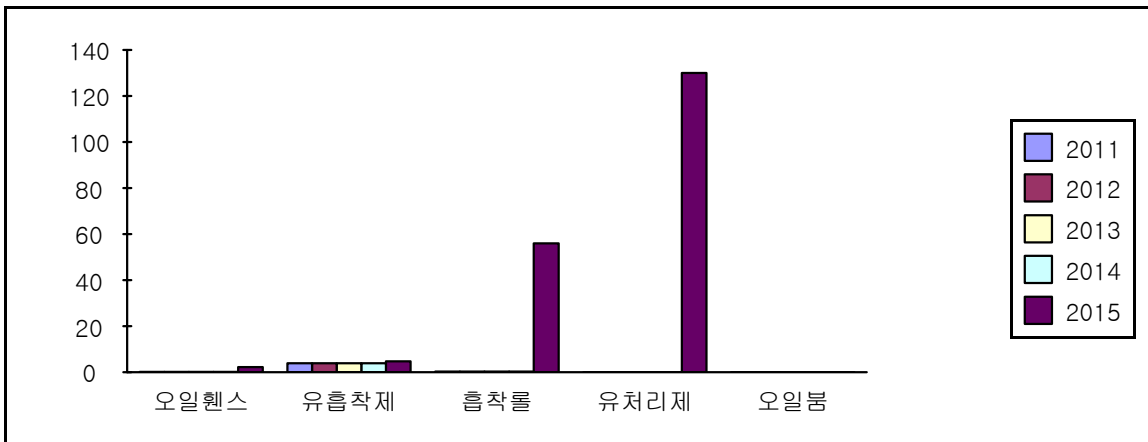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4	27	83	6	267	9(시체안치실)
병 원	3	24	75	5	267	9
보건소	1	3	8	1	0	0
기 타	-	-	-	-	-	-

### [수용시설]

구 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61	11,313	15	9,678	43	1,308	-	-	3	32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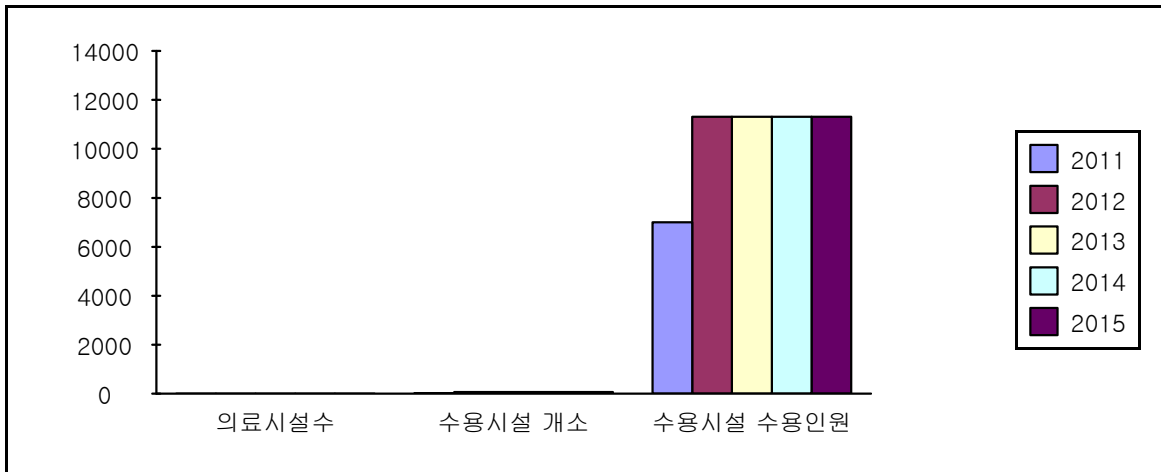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오일웁스	0.02	0.20	0.20	0.20	2.2
유흡착제	4	4	4	4	4.8
흡착물	0.30	0.30	0.30	0.30	56
유처리제	0.05	0.05	0.05	0.05	130
오일붐	-	-	-	13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의료시설수		7	7	7	7	7
수용시설	개소	61	61	61	61	61
	수용인원	11,313	11,313	11,313	11,313	11,313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구명보트	산소호흡기	잠수 세트	비고
총계	525	1	1	1	-	2	4	32	484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저	덤프	청소차
총계	96	1	50	2	4	39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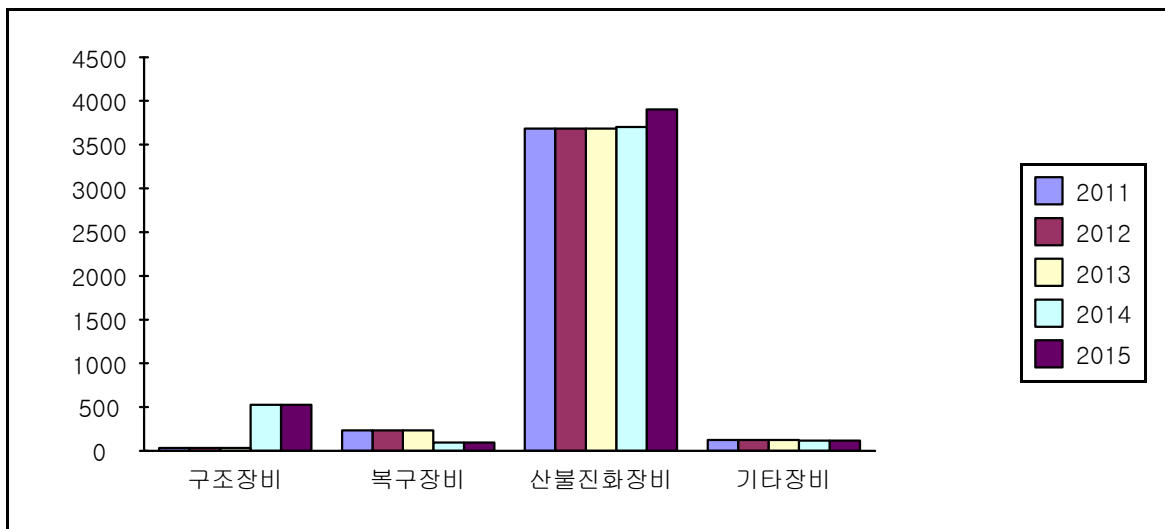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동력통재	휴대무전기	찍차대	간이수조	진호도구	진화안전장비세트
총계	3,903	0	1	16	12	12	247	1	4	3,600	10

◆ 기타장비

구분	계	양수기	발전기	소형절단기	고압분무기	기타
총계	117	30	3	40	2	4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조장비	32	32	32	525	525
복구장비	235	235	235	96	96
산불진화장비	3,685	3,685	3,685	3,703	3,903
기타장비	123	123	123	117	117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41	14	9	4	6	2	-	1	5 (조정3, 승강기1, 금속1)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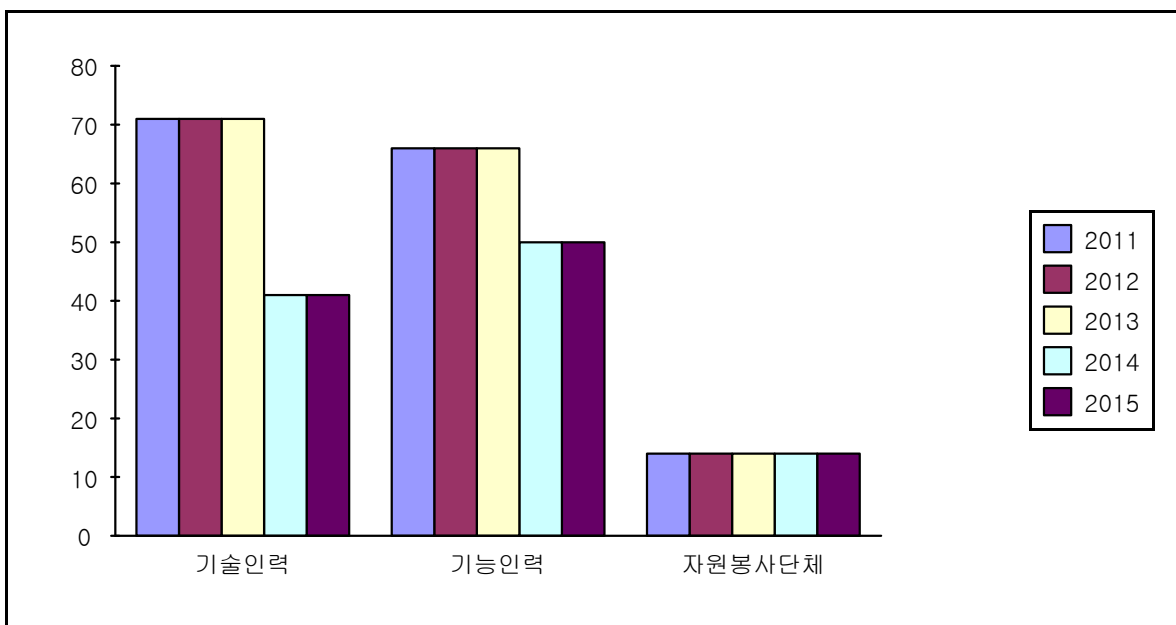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중기 정비	중기 운영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기타
인원	50	2	1	28	1	-	13	5 (건축1 정보처리1 보일러1 컴퓨터활용1 거꾸집1)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EMS 응급이송단	스킨스쿠버연합회	(사) 한국 해양 구조단 거창 지역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단체수	14	2	1	1	1	2	1	1	1	1	1	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술인력	71	71	71	41	41
기능인력	66	66	66	50	50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14	14	14	14	14



-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현행화로 인한 정비 실시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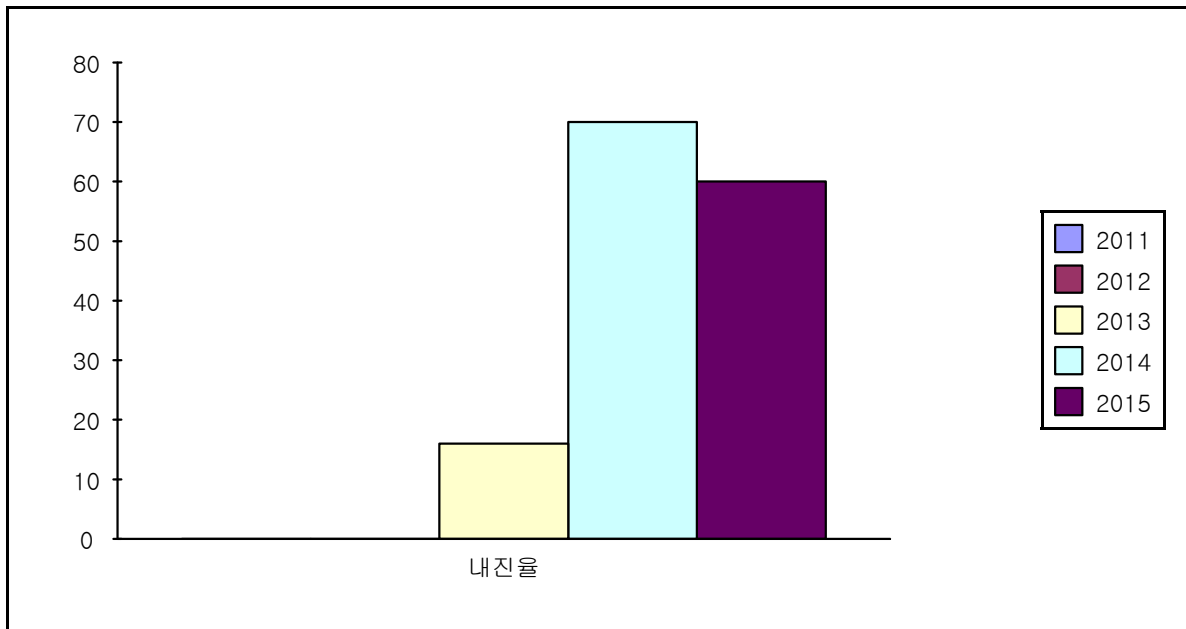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	2015. 3. 19.	행정자치부	지방도로 정비사업 우수기관	
2014년 소하천 정비 추진실태 점검	2015. 5. 25.	국민안전처	제도이행,사업추진 실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우수기관	
2015년 경상남도 을지연습 평가	2015. 9. 4.	경상남도	군부 최우수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2015. 12. 22.	경상남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공	
2015년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참여 유공	2015. 12. 31.	국민안전처	공동주택 자체안전 점검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5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75	45	-	-	60
공공건축물	37	11	-	-	29
도로시설물	25	24	-	-	96
수도시설	4	3	-	-	75
폐수종말 처리시설	1	1	-	-	100
공공하수 처리시설	3	3	-	-	100
병원시설	5	3	-	-	6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내진율(%)	-	-	16	70	60



- 교량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로 인한 내진성 확보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보강	부	부	
종합상황실	보강	부	부	

- 2015년 내진보강 예산 미확보, 2016년 내진보강 예산확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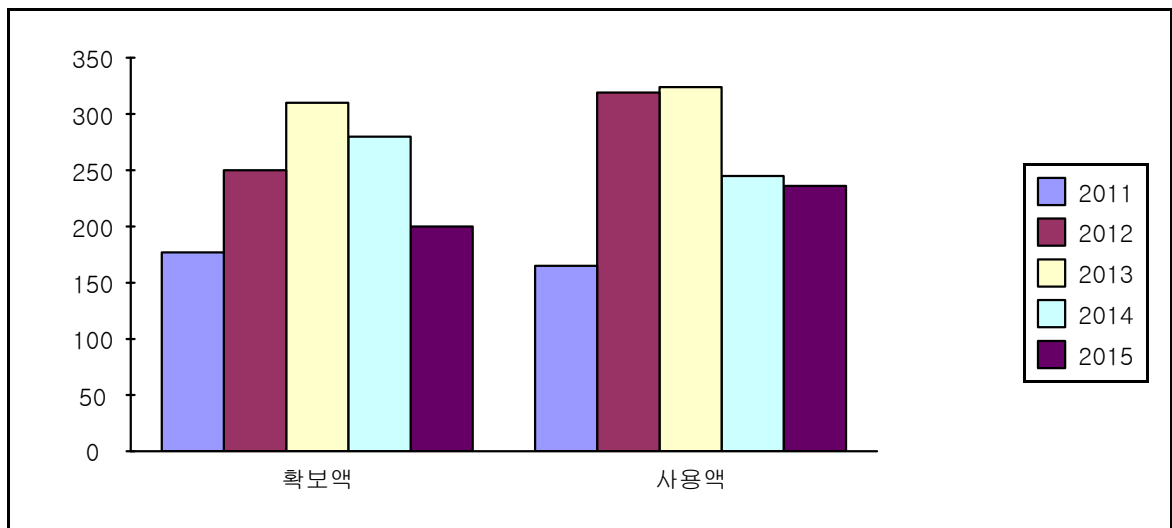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237백만원	237백만원	200백만원	84.4%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확보액		177	250	310	280	200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10	4		16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65	309	320	245	220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	-	-	-





- 2015년 적립기준액은 237백만원이나 확보액은 200백만원으로 기준액을 충족하지 못함.
- 2015년은 8개사업에 총사업비 539백만원(도비 299, 군비 240)을 예산편성하여 군비 사용액은 236백만원으로 실확보액 200백만원 대비 36백만원을 초과 사용하였음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실과소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재난초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사회·자연재난 총괄재난 대응 조치체계
비상시영상회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행정과	2016	비상시영상회의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군청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무과	2016	군청사 재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위기경보수준, 위기경보 수준별, 우리군 업무·역할, 부록 등	농업기술센터	2016	경상남도 가축질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개정('15.9)에 따른 후속조치
저수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과	2016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가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강기경제과	2016	가스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창조산업과	2016	전력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6	감염병분야 위기관리, 해외산종 관내 유입 방지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6	병원진료, 의약품공급, 혈액수급

행동매뉴얼 명	실과소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녹색환경과	2016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하수도 사업소	2016	식용수 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
유해화학유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녹색환경과	2016	유해화학유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육상화물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문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문화관광과	2016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산림녹지과	2016	산불재난 예방 대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산림녹지과	2016	산사태 예방 대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시건축과	2016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대비 대응 및 행동요령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풍수해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지진재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설해(대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대설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경기장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체육청소년 사업소	2016	사전안전대책, 재난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종목별·재해별 안전대책
축제 현장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문화관광과	2016	축제 현장사고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공연장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문화센터	2016	공연장 사고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행동매뉴얼 명	실 과 소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관리절차 및 사항
화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녹색환경과	2016	화사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다중밀집 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다중밀집 시설 대형화재로 인한 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대형교량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과	2016	대형교량사고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내륙 유도선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내륙 유도선 사고 로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도시건축과	2016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기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기뭄대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6	폭염대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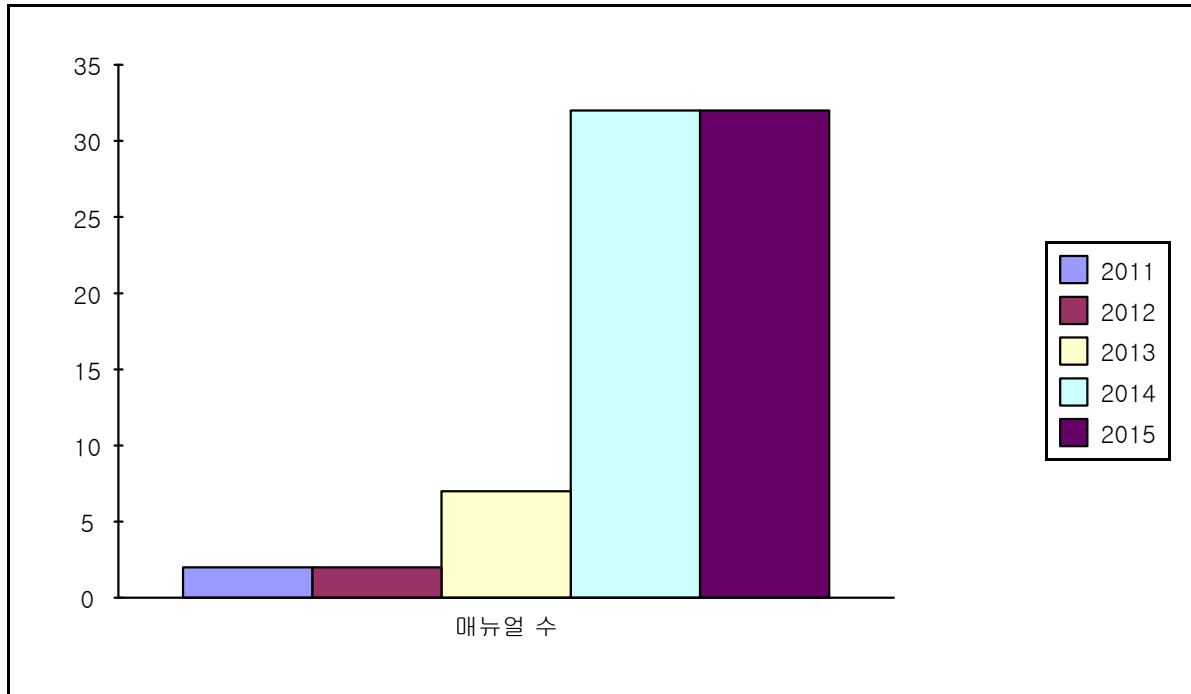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비상시영상회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5.2	- 비상시 영상회의 담당자 변경에 따른 비상 연락망 정비	
거창군 경기장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5.03	- 주요 안전관리 대책 현행화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산불재난 현장조치	2015.3월	산불재난 현장조치	해당사항없음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5.9.4~20 15.9.5	가상현장 방역훈련	해당사항없음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매뉴얼 수	2	3	7	32	32



- 체계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정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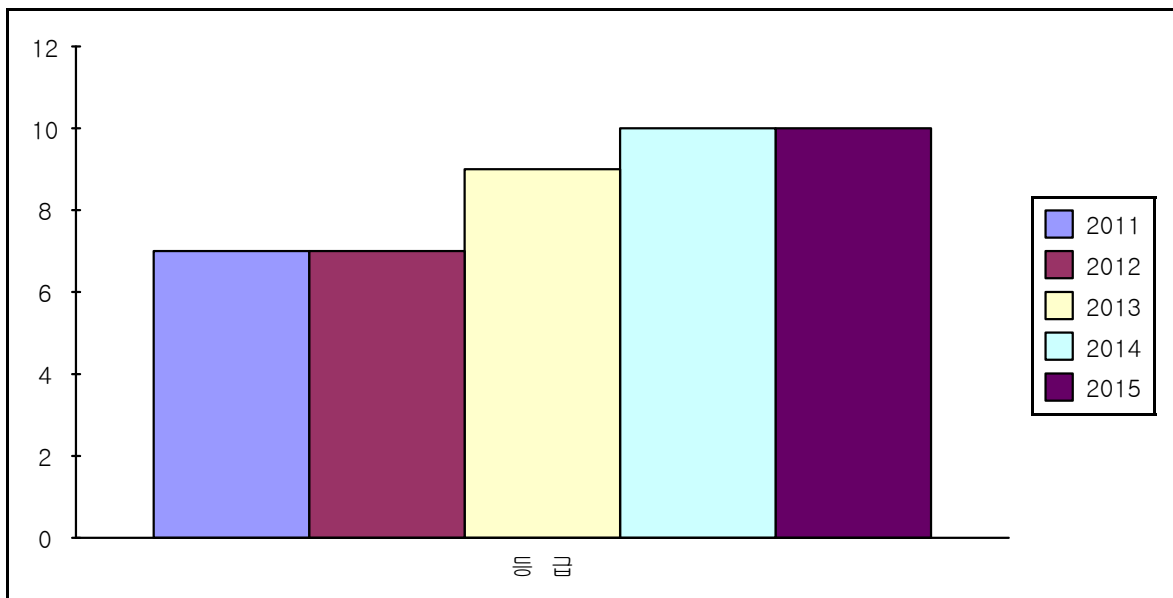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475	0.320	0.900	10(마)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등 급	7	7	9	10	10



- 방재성능 반영비중 증가('12년 60% → '13년 80%)에 따라 전국 230개 시군구 안전도 대체로 1~2등급 하락

-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5 경상남도 을지연습 평가』 2년 연속 군부 ‘최우수기관’ 선정
  - 『2015 물놀이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거창군 안전총괄과 (담당자 : 우보현, 전화 : 055)940-363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